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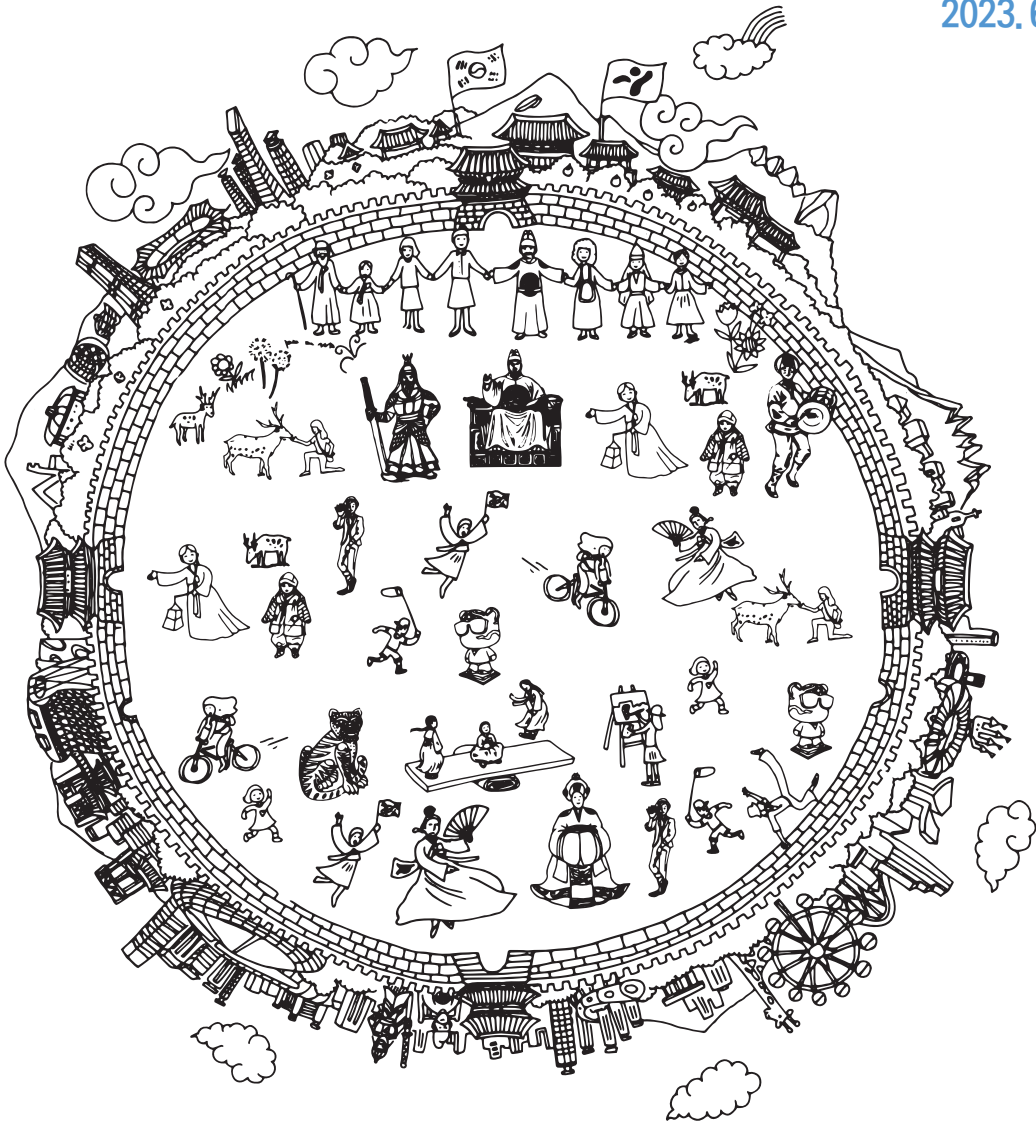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78호
2023. 6. 1.(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55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	---

[예 규]

제735호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11
-------------------------------------	----

◆ 고 시

제2023 - 206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업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22
제2023 - 208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변경)	24
제2023 - 213호 창덕궁 앞 도성한북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28
제2023 - 2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38
제2023 - 215호 온수근린공원(텃골온수골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9
제2023 - 216호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3
제2023 - 2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62
제2023 - 219호 도시관리계획(메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7
제2023 - 220호 동작구 노량진동 19 - 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78
제2023 - 22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84

◆ 공 고

제2023 - 153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86
제2023 - 1535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87
제2023 - 153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1개 구역]	88
제2023 - 1541호 과학관 등록 공고	89

제2023 - 154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90
제2023 - 155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91
제2023 - 1553호	공시송달(비영리민간단체 말소) 공고	92
제2023 - 15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93
제2023 - 1556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117
제2023 - 1558호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118
제2023 - 1565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119
제2023 - 1566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123
제2023 - 15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124
제2023 - 1581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고	125
제2023 - 158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127
제2023 - 1597호	2023 「옥탑방 주거성능개선 사업」 추가 모집 공고	129

◆ 서울특별시교육청

[규 칙]

제105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35
--------	---	-----

[입법예고]

제2023 - 175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7
제2023 - 1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9

◆ 구 고 시

제2023 - 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랑구)	153
제2023 - 5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랑구)	158
제2023 - 6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	161
제2023 - 63호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은평구)	164
제2023 - 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167

◆ 구 공 고

제2023 - 754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종로구)	172
제2023 - 685호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동대문구)	179
제2023 - 933호	상도동 356 - 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동작구) ...	194
제2023 - 12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195

◆ 기 타

제2023 - 17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197
--------------	--------------------------------	-----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55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684	429	1,159	5,232	226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17	4,629	420	395	5,049	224
-------	--------	-------	-----	-----	-------	-----

같은 표 4급 소계란 및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56	153	19	8	68	8
-------	-----	-----	----	---	----	---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77	57			16	4
------------	----	----	--	--	----	---

같은 표 4·5급 소계란 및 서기관·기술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5급 소계	9	9				
---------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2	2				
---------------------------------------	---	---	--	--	--	--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약무란, 행정또는보건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녹지또는시설란, 행정·환경·공업또는녹지란, 행정·방재안전또는시설란, 간호또는보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470	979	51	58	335	47
행정	676	489	47	24	74	42

약무	9	7			2	
----	---	---	--	--	---	--

행정또는보건	5	5				
--------	---	---	--	--	--	--

행정또는시설	73	59			11	3
--------	----	----	--	--	----	---

행정 · 공업또는시설	78	69		1	8	
-------------	----	----	--	---	---	--

행정 · 녹지또는시설	2	1			1	
-------------	---	---	--	--	---	--

행정 · 환경 · 공업또는 녹지	3	3				
----------------------	---	---	--	--	--	--

행정 · 방재안전또는시 설	3	3				
-------------------	---	---	--	--	--	--

간호또는보건	3	3				
--------	---	---	--	--	--	--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간호란,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방재안전또는녹지란 아래에 시설·방재안전또는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급 소계	3,579	1,887	174	106	1,308	104
행정	1,389	877	144	40	254	74
공업	342	108	6	4	222	2
간호	125	11			114	
시설	581	326	3	2	232	18
시설·방재 안전또는전산	1	1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공업란, 시설란, 위생란, 운전란, 행정·공업·시설·전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438	1,369	124	145	1,739	61
행정	1,277	693	91	59	387	47
전산	141	82	5	10	43	1
공업	412	25	6	12	367	2
시설	554	244	2	5	295	8
위생	7	1		2	4	
운전	45	11	1	2	31	

행정·공업·시설·전산	10	9			1	
-------------	----	---	--	--	---	--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방호란, 공업란, 환경란, 시설란, 보건란, 시설관리란, 건축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화공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164	157	44	70	890	3
행정	132	28	13	16	73	2

전산	19	5		5	9	
----	----	---	--	---	---	--

방호	85	27	6	3	49	
공업	102	7	1	5	89	

환경	20	2			18	
시설	81	8			73	

보건	7	1			6	
----	---	---	--	--	---	--

시설관리	68	1			67	
------	----	---	--	--	----	--

건축운영	1				1	
------	---	--	--	--	---	--

전기운영	29	1	1		27	
기계운영	62	2		1	59	
화공운영	1				1	

같은 표 9급 소계란, 시설관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597	8	3	3	583	-
시설관리	348	1		1	346	

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란, 나군 소계란, 다군 소계란, 다군 고압전기안전관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나군 동물사육란 아래에 고압전기안전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경력관 소계	149	27	4	3	115	
나군 소계	65	23	4	3	35	
고압전기안전관리	2				2	
다군 소계	80				80	
고압전기안전관리	29				29	

별표 2의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정란, 소방령란, 소방장란, 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7,434	157		7,277		
소방정	32	3		29		

소방령	167	27		140		
소방장	833	37		796		
소방사	3,683	23		3,660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5급 약무란, 6급 간호란, 8급 보건란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총괄 기능 강화 및 행정수요 대응 등에 따라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 (4급, 소방정) 신설하여 소방인력 직급 조정

- (직속기관) 소방사 △1 → (본청) 소방정 +1

나. 신규자원회수시설 적기 건립 등을 위해 ‘자원회수시설추진반’ (4·5급)을 ‘자원회수시설과’ (4급)로 격상·확대

- (본청) 4·5급 △1 → 4급 +1

다. 물재생센터(4명) 및 도로사업소 (8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위해 일반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

- (사업소) 5급이하 △12 → 전문경력관(고압전기안전관리) 나군+2, 다군 +10

라.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의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직급 간 조정 (총 26명)

[예 규]

◆ 서울특별시에규 제735호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3년 6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의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 “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써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녹화 여부가 외전상 인식 가능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2.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써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음성의 녹음

나. 녹음 여부가 외전상 인식 가능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써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써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제7조의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 있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폭행·기물파손 등을 하고 있거나, 폭행·기물파손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 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 · 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빼앗기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추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3. 시장이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사용부서 부서장)
2. 부(사용부서 총괄담당)
- ②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 · 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입 · 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 · 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 관리책임자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등록된 사용부서 외에 임의로 다른 부서에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③ 휴대용 보호장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
-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이 영상기록 및 음성기록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처리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상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제5조 제5호 관련)

[illegible]

음성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제5조 제5호 관련)

[illegible]

[별지 제2호 서식]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제7조 제2항 관련)

[illegible]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제7조 제2항 관련)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록대장 (제8조 제1항 관련)

[illegible]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등록대장 (제8조 제1항 관련)

[illegible]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악성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공무원증 녹음기 등 휴대용 개인 보호장비 도입 · 운영 필요
-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관련 기준 및 준수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기기관리 및 영상 · 음성 기록물 보안관리 등을 위한 세부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제3조)

- 휴대용 보호장비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운영기준

다. 관리책임자 및 입 · 출고 담당자 지정(제7조)

- 관리책임자 정(사용부서의 장) · 부(사용부서 총괄담당) 지정 및 입 · 출고 담당자 지정

라.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제8조~제10조)

-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전용 저장소 구비) 및 운영

마. 기록물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제11조~제13조)

- 민원인의 열람 요구시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 준용
- 관리책임자의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교육 실시(연 2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6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업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 제2항과 동 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시장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한국 건설 엔지니어링 협회	송명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2. 행정사항

가.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반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0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8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변경)**

1. 오동근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으며,
2. 공원 조성계획은 건설부고시 제424호(1985. 9.28.)로 최초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 - 393호(2021. 7.29.)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267호(2022. 6.23.)로 도시계획 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한 후 오동근린공원 “가지구” 재조성에 대한 사업인가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 1251호(2023. 5. 4.)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변경고시 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공원운영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90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리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사업
 - 3) 사업의 규모: 116㎡
 - 4) 사업의 내용: 공원 경계부 재조성(지장건물 보상 및 철거)
- 나. 변경사유 : 사업기간의 연장 및 사업의 내용 변경(보상 → 보상 및 철거)
- 다.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바.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용 및 수용할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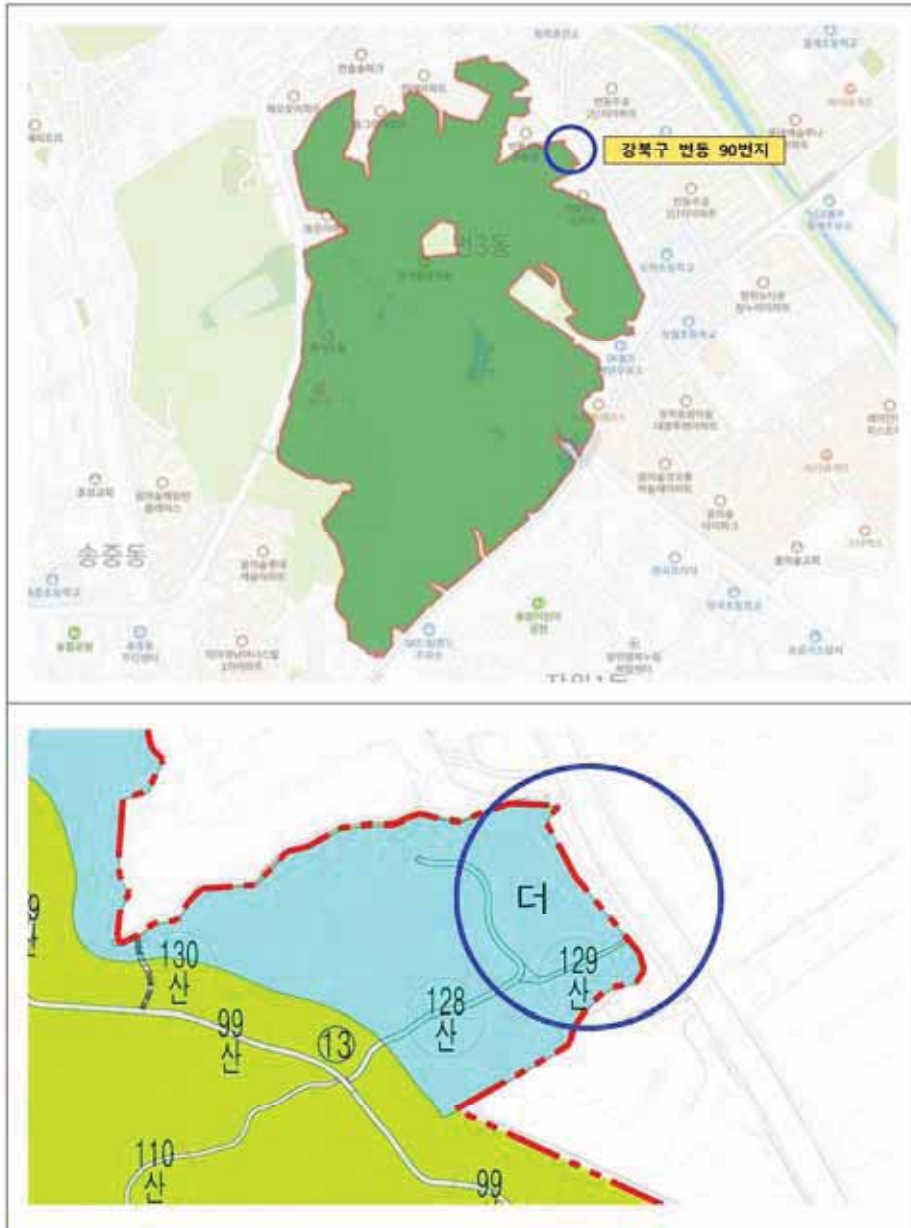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해당사항										

○ 수용 및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변동 90	무허가건물(전포)	샌드위치판넬	1동	서상에	강북구 화계사길 60	윤영진	강북구 월계로37길 77	세입자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변동 90	무허가건물(창고)	샌드위치판넬	1동	이순출	강북구 월계로37길 77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변동 90	무허가건물 (주거용)	샌드위치판넬	1동							
		무허가건물 (사무실)							이상석	강북구 월계로37길 77	세입자
		무허가건물 (주거용)					이상수	강북구 월계로37길 77	세입자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변동 90	무허가건물 (주거용)	샌드위치판넬	1동	윤정옥	강북구 월계로37길 77					

사업시행지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오동근린공원 가지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변동 90번지



보상 지장건물 및 공사계획도서

□ 오동근린공원 가지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90번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13호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 - 148호(2018.5.10.)로 고시된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변경없음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 변경없음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중심시기지형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일대	403,000㎡	-

다. 사업기간(마중물사업) : (기정)2015년 ~ 2019년 → (변경)2015년 ~ 2023년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명칭 : 변경없음

나.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변경없음

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도시재생사업 및 자원조달계획

○ 마중물 사업 : (기정)5개 부문, 17개 사업 → (변경)5개 부문, 13개 사업

사업명	단위사업	세부단위사업	구분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돈화문로 궁궐가네길 조성	돈화문로 보행중심가로 조성 및 경관 정비	돈화문로 가로환경정비사업	기정	8,469	-	8,469	-	-
			변경	7,322	-	7,322	-	-
		서울 가꿈가게지원	기정	620	-	620	-	-
			변경	89	-	89	-	-
	궁중문화 체험거점 조성	지역 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	기정	311	-	311	-	-
			폐지	-	-	-	-	-

사업명	단위사업	세부단위사업	구분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역사문화축제 활성화	조선왕조 왕실 생활문화 관련 행사 · 투어프로그램 활성화	기정	300	-	300	-	-	
			변경	18	-	18	-	-	
삼일대로 3.1운동 기념 시민공간 조성	삼일대로 가치공유 사업	3.1운동 탐방로 조성사업	기정	560	-	560	-	-	
			폐지	-	-	-	-	-	
		3.1운동 기념 축제	기정	700	-	700	-	-	
			변경	72	-	72	-	-	
	삼일대로 일대 주요거점 개선사업	거점별 환경개선 지원사업	기정	200	-	200	-	-	
			폐지	-	-	-	-	-	
낙원 · 익선 의식주락 신흥문화 재창조 거점 조성	단절에서 연결로 낙원상가 활성화 거점 조성 지원	낙원상가 하부공간개선	기정	1,600	-	1,600	-	-	
			변경	3,455	-	3,455	-	-	
		낙원상가 옥상공원, 열린무대조성 지원	기정	1,100	-	1,100	-	-	
			변경	177	-	177	-	-	
		"익선, 낙원, 세운" 문화예술행사	기정	60	-	60	-	-	
			변경	30	-	30	-	-	
		대표적인 음악거리 음악동 조성	돈화문로11길 보행연결가로 정비	기정	1,000	-	1,000	-	-
				변경	2,018	-	2,018	-	-
	대한제국기군악대 양악연주재현 등 행사		기정	100	-	100	-	-	
			변경	40	-	40	-	-	
서순라길 특화산업 기반 공예창작거리 조성	서순라길 공방특화가로 조성	서순라길 가로환경 정비사업	기정	2,000	-	2,000	-	-	
			변경	3,292	-	3,292	-	-	
	기존 산업자원과 창의적 성장동력의 융복합 지원	서순라길 행사 프로그램 활성화	기정	80	-	80	-	-	
			폐지	-	-	-	-	-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소통방) 운영		기정	2,000	-	2,000	-	-	
			변경	1,433	-	1,433	-	-	
	시민/대학생/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기정	325	-	325	-	-	
			변경	321	-	321	-	-	
	주민공모사업		기정	575	-	575	-	-	
			변경	637	-	637	-	-	
도시재생 미증물사업 소계			기정	20,000	-	20,000	-	-	
			변경	18,904	-	18,904	-	-	

○ 협력사업(추진사업) : (기정)5개 부문, 19개 사업 → (변경)5개 부문, 18개사업

사업명	단위사업	세부단위사업	구분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돈화문로 궁궐가네길 조성	궁중문화 체험거점 조성	돈화문로 국악당 및 (가칭)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	변경없음	45,686	11,087	34,599	-	-
		돈화문 국악당 운영	변경없음	6,877	-	6,877	-	-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변경없음	2,773	11	2,762	-	-
	역사문화축제 활성화	정조대왕 화성행차 재현	변경없음	4,918	-	4,918	-	-
		중요대제 지원	변경없음	610	-	610	-	-
		윤현공 왕실생활문화 관련 전통문화행사 운영	변경없음	3,640	-	3,640	-	-
삼일대로 3.1운동 기념 시민공간 조성	삼일대로 시민공간 조성사업	삼일대로 시민공간 조성사업	변경없음	2,992	-	2,992	-	-
	삼일대로 일대 주요거점 개선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기정	17,439	-	17,439	-	-
			폐지	-	-	-	-	-
		탑골공원 주변 환경정비	변경없음	1,773	-	1,773	-	-
낙원·익선 의식주락 신흥문화 재창조 거점 조성	대표적인 음악거리 음악동 조성	국악활성화 사업	변경없음	2,710	-	2,710	-	-
	100년 한옥마을 익선동 도시한옥 특성 및 지역성 보존	익선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없음	150	-	150	-	-
		익선동 도시형한옥 한옥 수선비용 지원	변경없음	3,000	-	3,000	-	-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	변경없음	40	-	40	-	-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변경없음	50	-	50	-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정비	음식점 특화골목 특성보존·정비	변경없음	300	-	300	-	-
		새들마을 사업	변경없음	5,242	3,597	721	924	-
	서순라길 특화산업 기반 공예창작거리 조성	서순라길 공방특화가로 조성	한옥 수선비용 지원을 통한 한옥공방 조성 유도	변경없음	1,500	-	1,500	-
기존 산업자원과 창의적 성장동력의 융복합 지원		주얼리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변경없음	9,462	-	9,462	-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방 활동가 지원		변경없음	330	-	330	-	-
도시재생 협력사업(기추진사업) 소계			기정	109,492	14,695	93,873	924	-
			변경	92,053	14,695	76,434	924	-

○ 협력사업(신규제안사업) : (기정)4개부문, 14개 사업 → (변경)삭제

2) 파급효과(마중물사업)

사업명	단위사업	세부 단위사업	파급효과
돈화문로 궁궐가는길 조성	돈화문로 보행중심가로 조성 및 경관 정비	돈화문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 창덕궁 가는 길로서 돈화문로 위상 및 역사적 가치 회복 -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 도모(매출액 및 점포수 증가 등) - 지역 환경에 대한 이용만족도 증가
		서울가꿈가게 지원	- 역사인문 스토리 등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장소 조성을 통한 특화용도 증가 - 창덕궁, 종묘, 북촌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변 관광객 유도를 통해 유동인구 증가 -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 도모(매출액 및 점포수 증가 등) - 상가 개량 증가(옥외광고물 및 점포 개보수 등) - 지역 환경에 대한 이용만족도 증가
	역사문화축제 활성화	조선왕조 왕실 생활문화 관련 행사·투어 프로그램 상설화	- 역사인문 스토리 등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여 조선왕조 왕실생활의 중심공간으로서 돈화문로의 장소인문적 정체성 확립 - 가로환경 개선 및 이벤트 개최 등 이미지 개선을 통한 주변 유동인구 증가 -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 도모(매출액 및 점포수 증가 등) - 지역 환경에 대한 이용만족도 증가
삼일대로 3.1운동 기념 시민공간 조성	삼일대로 가치공유 사업	3.1운동 기념 축제	- 참여형, 체험형 축제 운영을 통해 3.1운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및 이해도 제고 - 서울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삼일대로 일대에서 서울시 차원의 축제를 기획, 운영함으로써 삼일대로의 장소적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대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부여
낙원~익선 의식주락 신흥문화 재창조 거점 조성	단절에서 연결로 낙원상가 활성화 거점 조성 지원	낙원상가 하부공간 개선	- 보행환경개선을 통하여 인사동~돈화문로, 종로~삼일로 간 보행 연계성 확보 - 하부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시민 활용 유도를 통해 집객효과 및 주변지역으로 보행자 확산 유도 - 향후 낙원상가 동선개선, 입면개선 등을 추가로 진행하여 낙원상가 및 주변지역을 도심부 내 활성화된 중심지역으로 개선
		낙원상가 옥상공원, 열린무대 조성 지원	낙원상가 공간자원의 개방적 활용에 대한 여건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간 활용 가능성 제시
		“익선, 낙원, 세운” 문화예술행사	- 세계문자 심포지아 행사와 연계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재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역활성화 도모 - 향후 낙원상가 하부공간 개선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의 창의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간 활용의 가능성 제시
	대표적인 음악거리 음악동 조성	돈화문로11길 보행연결가로 정비	- 국·양악 콘텐츠를 활용한 음악 거리 조성을 통한 특화용도 증가 - 인사동과 대상지 내부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할 통한 주변 관광객 유도를 통해 유동인구 증가 -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 도모(매출액 및 점포수 증가 등) - 일자리 창출(고용인수 증가), 상가 개량 증가(옥외광고물 및 점포 개보수 등) 및 이용만족도 증가

사업명	단위사업	세부 단위사업	파급효과
		대한제국기 군악대 양악연주 재현 등 행사	• 도성한복판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증자료 발굴 및 아카이빙 • 역사문화 행사를 통한 집객 효과 및 관광객 유도를 통해 유동인구 증가 기대 •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 도모(매출액 및 점포수 증가 등) • 일자리 창출(고용인수 증가), 상가 개량 증가(옥외광고물 및 점포 개보수 등) 및 이용만족도 증가
서순라길 특화산업 기반 공예창작 거리 조성	서순라길 공방특화가로 조성	서순라길 가로환경정비사업	• 매력 있는 관광거리 조성을 통한 복촌과 청덕궁 이용자의 대상지 내부 지역의 연결성을 강화를 통한 주변 관광객 유도를 통해 유동인구 증가 •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 도모(매출액 및 점포수 증가 등) • 유동인구 증가 및 상가 활성화에 따른 지역 청결 및 이용행태 문제 개선 • 일자리 창출(고용인수 증가), 상가 개량 증가(옥외광고물 및 점포 개보수 등) • 지역 환경에 대한 이용만족도 증가
	기존 산업자원과 창의적 성장동력의 융복합 지원	서순라길 행사/프로그램 활성화	• 융복합된 지역 활동을 통한 신선한 시각에서의 지역의 잠재력 발굴 및 이미지 쇄신 • 흥미로운 프로그램 개최 등 이미지 개선을 통한 주변 유동인구 증가 • 홍보 프로그램을 통한 매출 및 창의적 일자리 증가 • 지역 환경에 대한 이용만족도 증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소통방) 운영		• 지역밀착형 거점 조성을 통해 활성화사업 홍보 효과 및 주민참여 유도 • 산업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기능
	시민/대학생/전문가 아이디어공모		• 낙원상가 및 돈화문로 일대 재생에 대하여 일반시민 및 전문가 등 공감대 형성, 사업 홍보 • 낙원상가 및 돈화문로 일대 재생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사업에 반영
	주민공모사업		• 주민의 제안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기대 • 주민제안 공모를 통해 지역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예상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구분	기반시설 종류	단위 사업명	위치	내용	비고
기정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삼일대로 일대 주요거점 개선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종로구 낙원동 213-1번지 외 7필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3.1운동 전시관, 체험 및 교육관, 도시재생융복합지원센터 운영	협력사업 (기추진사업)
변경	해당없음				세부단위사업계획 폐지

마. 예산집행계획

○ 마중물 사업 : 총 사업비 (기정)200.0억원 → (변경)189.04억원

사업명		구분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계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돈화문로 궁궐기능길 조성	돈화문로 가로환경정비사업	기정	8,469	-	-	308	3,220	4,941	-	-	-	-	
		변경	7,322	-	-	113	111	2,200	4,898	-	-	-	
	서울가꿈가게 지원	기정	620	-	-	120	500	-	-	-	-	-	
		변경	89	-	-	44	45	-	-	-	-	-	
	지역 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	기정	311	-	-	-	-	311	-	-	-	-	
		폐지	-	-	-	-	-	-	-	-	-	-	
	조선왕조·왕실 생활문화 관련 행사투어 프로그램	기정	300	-	-	19	35	246	-	-	-	-	
		변경	18	-	-	18	-	-	-	-	-	-	
삼일대로 3.1운동 기념 시민공간 조성	3.1운동 탐방로 조성사업	기정	560	-	-	-	-	560	-	-	-	-	
		폐지	-	-	-	-	-	-	-	-	-	-	
	3.1운동 기념축제	기정	700	-	-	-	-	700	-	-	-	-	
		변경	72	-	-	-	-	72	-	-	-	-	
	거점별 환경개선 지원사업	기정	200	-	-	-	200	-	-	-	-	-	
		폐지	-	-	-	-	-	-	-	-	-	-	
낙원~익선 의식주락 신홍문화 재창조 거점 조성	낙원상가 하부공간 개선	기정	1,600	-	-	57	596	947	-	-	-	-	
		변경	3,455	-	-	44	44	1,203	2,164	-	-	-	
	낙원상가 옥상공원, 열린무대조성 지원	기정	1,100	-	-	-	1,000	100	-	-	-	-	
		변경	177	-	-	-	177	-	-	-	-	-	
	"익선, 낙원, 세운" 문화예술행사	기정	60	30	30	-	-	-	-	-	-	-	
		변경	30	-	30	-	-	-	-	-	-	-	
	돈화문로11길 보행연결가로 정비	기정	1,000	-	-	38	398	564	-	-	-	-	
		변경	2,018	-	-	13	13	259	538	761	434	-	
	대한제국기 군악대 양악연주 재현 등 행사	기정	100	-	-	11	45	44	-	-	-	-	
		변경	40	-	-	11	-	29	-	-	-	-	

사업명		구분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계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서순라길 특화산업 기반 공예창작거리 조성	서순라길 가로환경 정비사업	기정	2,000	-	-	332	756	912	-	-	-	-
		변경	3,292	-	-	51	50	992	2,199	-	-	-
	서순라길 행사 프로그램 활성화	기정	80	-	-	-	20	60	-	-	-	-
		폐지	-	-	-	-	-	-	-	-	-	-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소통방)운영	기정	2,000	556	526	325	400	193	-	-	-	-
		변경	1,433	401	248	444	132	93	61	-	27	27
	시민/대학생/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기정	325	325	-	-	-	-	-	-	-	-
		변경	322	26	295	-	-	-	-	-	-	-
	주민공모사업	기정	575	-	44	150	300	81	-	-	-	-
		변경	637	-	44	150	249	166	28	-	-	-
계		기정	20,000	911	600	1,360	7,470	9,659	-	-	-	-
		변경	18,904	427	617	888	821	5,014	9,888	761	461	27

○ 협력사업(추진사업) : 총사업비 (기정)1,094.9억원 → (변경)920.53억원

사업명		구분	연도 및 사업비 백만원					
			계	~15	16	17	18	19
돈화문로 공궐가는길 조성	돈화문로국악당 및 (가칭) 돈화문 민오박물관건립	변경없음	45,686	37,953	3,065	495	4,173	-
	돈화문 국악당 운영	변경없음	6,877	37	1,380	1,820	1,820	1,820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운영지원	변경없음	2,773	581	431	587	587	587
	정조대왕화성행차 재현	변경없음	4,918	-	1,018	1,300	1,300	1,300
	종묘대제지원	변경없음	610	130	120	120	120	120
	운현궁 왕실생활문화 관련 전통문화 행사 운영	변경없음	3,640	768	718	718	718	718
삼일대로 3.1운동 기념 시민공간 조성	삼일대로시민공간조성사업	변경없음	2,992	-	200	200	2,592	-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기정	17,439	-	-	-	17,439	-
		폐지	-	-	-	-	-	-
	탑골공원 주변 환경정비	변경없음	1,773	200	397	392	392	392
낙원~익선 의식주락 신흥문화 재창조 거점 조성	국악활성화사업	변경없음	2,710	500	500	570	570	570
	익선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없음	150	100	50	-	-	-
	익선동 도시형한옥한옥 수선비용지원	변경없음	3,000	-	-	-	1,500	1,500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	변경없음	40	-	10	10	10	10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변경없음	50	-	-	-	25	25
	음식점 특화골목특성보존·정비	변경없음	300	-	-	60	120	120
	새뜰마을사업	변경없음	5,242	999	1,403	1,305	1,535	-
서순라길 특화산업기반 공예창작거리 조성	한옥 수선비용지원을 통한 한옥공방조성 유도	변경없음	1,500	-	-	-	-	1,500
	주얼리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변경없음	9,462	2,000	2,072	1,390	2,000	2,000

사업명		구분	연도 및 사업비 백만원					
			계	~15	16	17	18	19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방 활동가 지원	변경없음	330	-	110	-	110	110
총계		기정	109,492	43,268	11,474	8,967	35,011	10,772
		변경	92,053	43,268	11,474	8,967	17,572	10,772

○ 협력사업(신규제안) : 총사업비 (기정)235억원 → (변경)0억원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 사업관리(과정) 및 성과관리(변화) 모니터링 : 변경없음

○ 후속관리를 위한 종료시점 성과평가 : 변경(신설)

-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23)」의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운영기준에 따른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종료시점 성과평가 대상
-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마련하는 종료시점 성과평가의 구체적 기준 및 지표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관리 방안 확정

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공공·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①	문화 시설	문화 시설	종로구 낙원동 213-1 외 7필지	786.8	감)786.8	-	2018.5.10. 서울시고시 제2018-148호	도시재생 기반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폐지 : 786.8㎡ → 0㎡ : 감)786.8㎡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수립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계획(협력사업)' 이 사업실행력 및 시의성 등 타당성 부족 사유로 폐지됨에 따라, 집행계획이 부재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해제함.

4. 관련 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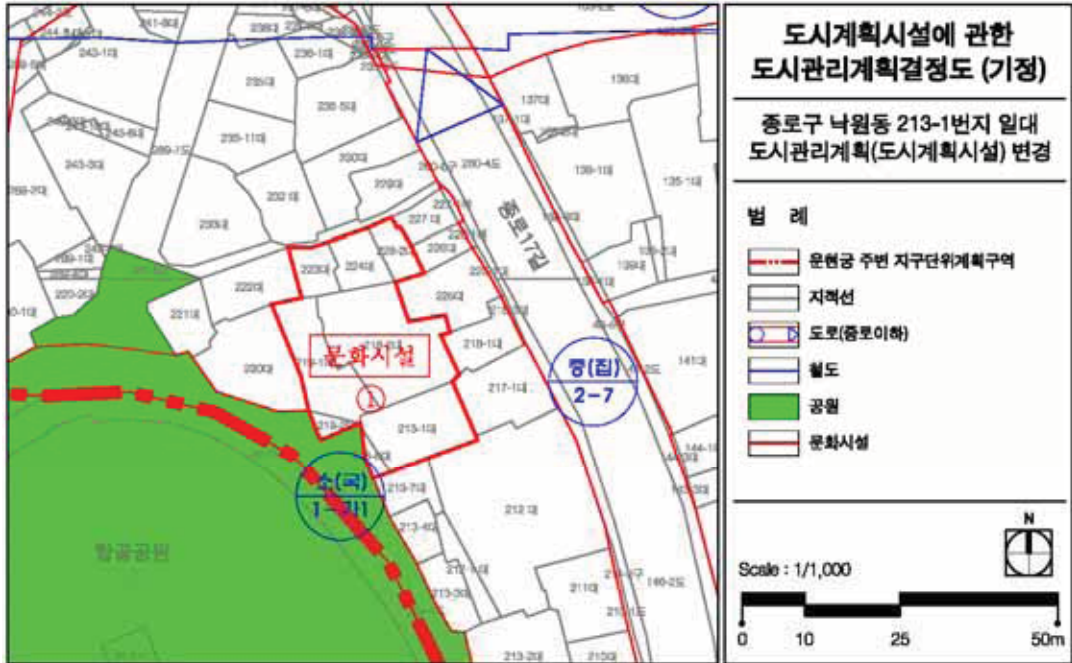
○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관련서류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02 - 2133 - 4656), 종로구 주택관리과(☎02 - 2148 - 262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551호(2020.12.17.)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관악구 신림동 240 - 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처리하고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관악구 신림동 240 - 3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

구분	명칭	대표자	주소
기정	멀티에셋서림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유)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5층 (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변경	멀티에셋서림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유)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01, (신림동)
	요진건설산업(주)	송선호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1 (무실동 요진타워7층)

4.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5. 사업개요(변경없음)
 -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0 - 3외 4필지
 - 나. 대지면적: 4,207.10㎡
 - 다. 건 폐 율: 57.66%(건축면적: 2,425.70㎡)
 - 라. 용 적 륜: 481.39%(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0,252.76㎡)
 - 마.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바. 규 모: 1개동, 지하4층/지상16층, 연면적 32,088.19㎡
 - 사. 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신고 등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15호

온수근린공원(텃골온수골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2 - 254호(2022.06.16.)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온수근린공원(텃골온수골지구)에 대하여 2022년 제7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온수근린공원(텃골온수골지구)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산5 - 63번지 일원

3. 공원면적 : 427,993㎡(텃골지구 6,026㎡, 온수골지구 7,985.3㎡)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 - 2133 - 2076) 및 구로구 공원녹지과(☎ 02 - 860 - 2321)에서 관련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운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운수근린공원 총괄표

구	본	변				경				변				경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구	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27,993.00	65,876.75	7	714.72	756.72	248	계		427,993.00	67,353.64	8	929.44	971.44	249			
소 계		427,993.00	65,876.75	7	714.72	714.72	248	소 계		427,993.00	67,344.78	8	929.44	971.44	249			
지양지구		80,208.90	14,847.73	1	37.51	37.51		지양지구		80,208.90	14,847.73	1	37.51	37.51				
연의지구		28,155.50						연의지구		28,155.50								
강월지구		2,755.60	1,161.26	1	125.25	125.25	27	강월지구		2,755.60	1,161.26	1	125.25	125.25	27			
강신지구		15,463.20	1,710.26				9	강신지구		15,463.20	1,710.26				9			
농업지구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농업지구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매봉지구		88,731.00	4,413.54				48	매봉지구		88,731.00	4,413.54				48			
갯절지구		77,320.60	17,508.19	2	48.74	48.74		갯절지구		77,320.60	17,508.19	2	48.74	48.74				
반달지구		1,529.20	726.14				17	반달지구		1,529.20	726.14				17			
문학지구		26,766.70	8,663.78	1	242.22	242.22	7	문학지구		26,766.70	8,663.78	1	242.22	242.22	7			
텃밭지구		6,026.00						텃밭지구		6,026.00	1,291.66	1	214.72	214.72	1			
공동지구		868.00	485.62				1	공동지구		868.00	485.62				1			
벽산지구		26,074.70	3,767.60				36	벽산지구		26,074.70	3,767.60				36			
운수골지구		7,985.30	1,875.54				10	운수골지구		7,985.30	2,060.77				10			
운수체육지구		17,413.20	3,699.37	1	54.00	54.00	50	운수체육지구		17,413.20	3,699.37	1	54.00	54.00	50			
시설물 (법정40%이하)		65,876.75 / 427,993.00 x 100 = 15.39%						시설물 (법정40%이하)		67,353.64 / 427,993.00 x 100 = 15.74%						증 0.35%		
건폐율 (법정10%이하)		714.72 / 427,993.00 x 100 = 0.17%						건폐율 (법정10%이하)		929.44 / 427,993.00 x 100 = 0.22%						증 0.05%		
특정시설물		8,471.06/ 65,876.75 x 100 = 12.86%						특정시설물		8,682.06/ 67,353.64 x 100 = 12.89%						증 0.03%		

※특정시설물(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물)

온수근린공원(텃밭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온수근린공원(텃밭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계	6,026.00										6,026.00	1,291.66				1	214.72	214.72	1																																																																																																																																																																																																																																																																																																																																																																																																																																																																																																																																																																																																																																																																																																																																																																																																																																																																																																																																																																																																																																																																																																																																																																																																																																																																																																																					</

2. 은수근린공원(텃밭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6,026.00								6,026.00	1,291.66	철골조	1	214.72	214.72	1	
기반 시설	계											662.87	662.87						증 662.87
	도로(계)											606.30	606.30						신설
	광장(계)											56.57	56.57						신설
	광장- 1									가-1	오류동 산 5-84임	44.00	44.00						신설
	광장- 2									가-2	오류동 산 5-84임	12.57	12.57						신설
조경 시설	계											22.80	22.80						증 22.80
	디딤석 놓기									나	오류동 산 5-84임	22.80	22.80						신설
휴양 시설	계											138.77	138.77					1	증 138.77
	휴게공간- 1									다	오류동 산 5-84임	108.91	108.91					정자(1)	신설
	휴게공간- 2									바	오류동 산 5-84임	29.86	29.86						신설
운동 시설	계											211.00	211.00						증 211.00
	다목적운동장									라	오류동 산 5-84임	211.00	211.00						신설
교양 시설	계											214.72	214.72		1	214.72	214.72		증 214.72
	책심터									1	오류동 산 5-84임	214.72	214.72	철골조	1	214.72	214.72		신설
편익 시설	계											41.50	41.50						증 41.50
	주차장									마	오류동 산 5-84임	41.50	41.50						신설
녹지 면적	계			6,026.00								4,734.34							감 1,291.66
기타	녹지			6,026.00								4,734.34							

3. 근린공원(텃밭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303.50	606.30				
신설	소로	계			28.80	176.68				
신설		3류	3-1	3.0~6.0	28.80	176.68	진입로	공원경계	신책로-11	
신설		계			274.70	429.62				
신설		3류	1	1.2	2.20	2.6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3	
신설		3류	2	1.2	3.50	4.20	산책로	산책로-1	광장-2	
신설		3류	3	1.2	54.00	64.80	산책로	산책로-1	공원경계	
신설		3류	4	1.5	13.00	19.50	산책로	산책로-3	공원경계	
신설		3류	5	1.5	29.00	43.50	산책로	산책로-3	휴게공간-1	
신설		3류	6	1.5	26.00	39.00	산책로	산책로-7	광장-2	
신설		3류	7	2.0	2.50	5.00	산책로	산책로-8	다목적운동장	
신설		3류	8	1.5	12.40	18.60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7	
신설		3류	9	1.5	14.00	21.00	산책로	산책로-10	휴게공간-1	
신설	산책로	3류	10	3.0	29.50	88.50	산책로	소로3-1	산책로-9	
신설		3류	11	1.2	33.40	40.08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0	
신설		3류	12	1.5	55.20	82.80	산책로	소로3-1	산책로-10	

은수근린공원(은수골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은수근린공원(은수골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계	7,985.30	1,875.54				10	7,985.30	2,060.77				10		
	반	소계	491.18	491.18					676.41	676.41					증 185.23
		도로	491.18	491.18					644.79	644.79					증 153.61
		광							31.62	31.62					증 31.62
조경 시설		1,384.36	1,384.36					1,384.36	1,384.36						
휴양 시설															
유흥 시설															
운동 시설															
교양 시설															
편의 시설															
관리 시설															
녹지 및 기타		6,109.76					10	5,924.53					10	감 185.23	
시설률 (법정40%이하)		1,875.54 / 7,985.30 x 100 = 23.49%						시설률 (법정40%이하)						2,060.17 / 7,985.30 x 100 = 25.81%	
건폐율 (법정10%이하)		-						건폐율 (법정10%이하)						-	
														증 2.32%	

2. 은수근린공원(은수팔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7,985.30	1,875.54					10			7,985.30	2,060.77					10		
기반 시설	계			491.18	491.18								676.41	676.41						중 185.23	
	도로(계)			491.18	491.18								644.79	644.79						중 153.61	
	광장(계)												31.62	31.62							
	광장 - 1										수궁동 신4-26	라	31.62	31.62						신설	
	계			1,384.36	1,384.36								1,384.36	1,384.36							
조경 시설	그라스원	가	수궁동 신4-25	964.40	964.40							가	964.40	964.40							
	생태연못	나	수궁동 신4-25	353.12	353.12							나	353.12	353.12							
	관찰데크	다	수궁동 신4-25	66.84	66.84							다	66.84	66.84							
	계			6,109.76							10		5,924.53						10		
녹지 및 기타	녹지			6,109.76									원두막(1) 양서투동면지(3)							원두막(1) 양서투동면지(3)	
	기타												곤충아파트(4) 새집마이데(2)							곤충아파트(4) 새집마이데(2) 감 185.23	

3. 온수근린공원(온수팔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51.98	491.18				
					322.04	644.79				
			계		251.98	491.18				
		3류	1	1.2	103.98	210.4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3류	1	1.2	101.89	205.59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3류	2	1.2 - 2.5	11.40	19.51	산책로	녹지대	산책로 1	
		3류	3	1.2	42.49	66.76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1	
		3류	4	1.2	11.79	17.67	산책로	녹지대	산책로 3	
		3류	5	1.2	11.41	17.12	산책로	녹지대	산책로 3	
		3류	6	1.2	16.69	25.14	산책로	녹지대	산책로 3	
		3류	7	1.2	20.81	56.8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3류	8	1.2	6.50	13.5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신설		3류	9	1.2	26.91	64.14	연결로	관철데크 다	산책로 1	
신설		3류	10	2.0	13.65	34.77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설		3류	11	1.8 - 5.0	58.50	123.70	공원경계	공원경계	공원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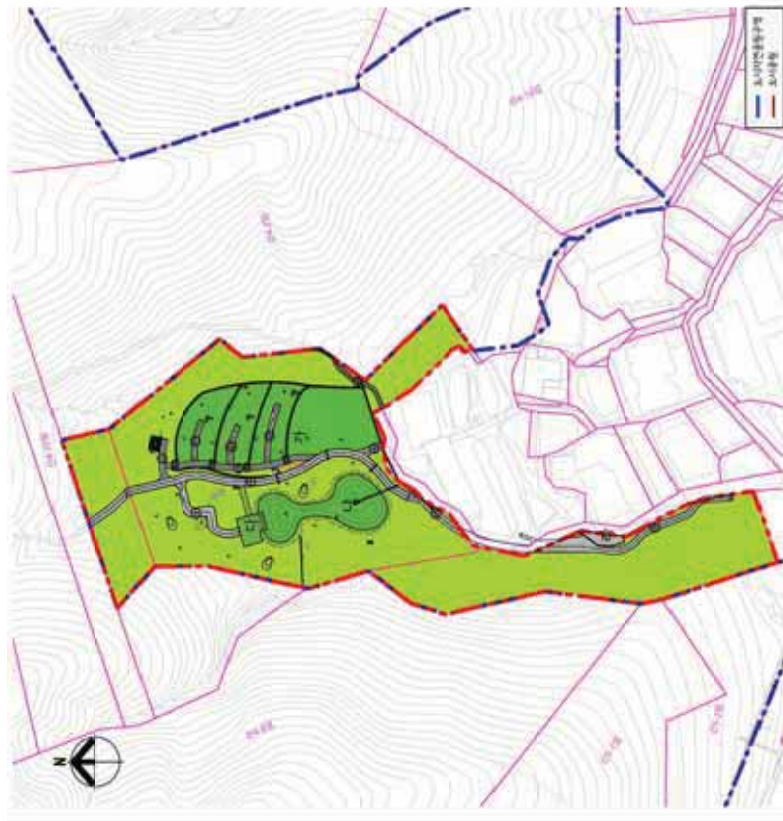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그리공원(텃밭지구)

[illegible][illegible]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그린데이(온수마을지구)



● www.pearsoned.com

구분	종류	종류명	단위	수량	단가	총액	과세액	부가가치세	합계
1000	1400	1400000000	합계	1,000,000,000	1,000.00	1,000,000,000			11
			1400000000	1,000,000,000	1,000.00	1,000,000,000			
			1400000000	1,000,000,000	1,000.00	1,000,000,000			
			1400000000	1,000,000,000	1,000.00	1,000,000,000			
2000	2000000000	2000000000	합계	2,000,000,000	2,000.00	2,000,000,000			22
			2000000000	2,000,000,000	2,000.00	2,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2,000.00	2,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2,000.00	2,000,000,000			
3000	3000000000	3000000000	합계	3,000,000,000	3,000.00	3,000,000,000			33
			3000000000	3,000,000,000	3,000.00	3,000,000,000			
			3000000000	3,000,000,000	3,000.00	3,000,000,000			
			3000000000	3,000,000,000	3,000.00	3,000,000,000			
4000	4000000000	4000000000	합계	4,000,000,000	4,000.00	4,000,000,000			44
			4000000000	4,000,000,000	4,000.00	4,000,000,000			
			4000000000	4,000,000,000	4,000.00	4,000,000,000			
			4000000000	4,000,000,000	4,000.00	4,000,000,000			
5000	5000000000	5000000000	합계	5,000,000,000	5,000.00	5,000,000,000			55
			5000000000	5,000,000,000	5,000.00	5,000,000,000			
			5000000000	5,000,000,000	5,000.00	5,000,000,000			
			5000000000	5,000,000,000	5,000.00	5,000,000,000			
6000	6000000000	6000000000	합계	6,000,000,000	6,000.00	6,000,000,000			66
			6000000000	6,000,000,000	6,000.00	6,000,000,000			
			6000000000	6,000,000,000	6,000.00	6,000,000,000			
			6000000000	6,000,000,000	6,000.00	6,000,000,000			
9000	9000000000	9000000000	합계	9,000,000,000	9,000.00	9,000,000,000			99
			9000000000	9,000,000,000	9,000.00	9,000,000,000			
			9000000000	9,000,000,000	9,000.00	9,000,000,000			

[illegibl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16호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828호(2020.07.30) 열람공고 및 제2021-1333호(2021.11.25) 재열람 공고한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3.02.03.)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461호(2023.04.06)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취지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60-22번지 일대	-	증)25,980	25,98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①	동대문구 전농동 60-22번지 일대	25,980	◦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원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980	-	25,980	100.0	
주거 지역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25,875	감)25,87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	증)25,875	25,98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전농동 60 - 22번지 일원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875	◦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1	26~35	보조 간선도로	1,900 (40)	답십리동	전농동	일반도로		총고 - 722호 (36.12.26)	전농로
변경	대로	3	11	26~35	"	"	"	"	"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	6~10	국지도로	252	전농동 295 - 2	전농동 38 - 2	일반도로		서고 - 215 (07.07.05)	
변경	소로	2	-	6~12	"	252 (48)	"	전농동 36 - 2	"			구역내 확폭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13	전농동 60 - 33	전농동 88 - 7	일반도로		서고 - 467호 (78.09.12)	
변경	소로	1	(1)	10	"	152	"	전농동 60 - 73	"			폭원확폭 /연장증가
기정	소로	2	(3)	8~10	국지도로	340	전농동 35 - 1	전농동 59	일반도로		서고 - 467호 (78.09.12)	
변경	소로	2	(3)	8~17	"	273 (233)	전농동 46 - 22	전농동 59 - 1	"			일부구간 선형 및 폭원변경
신설	소로	3	(1)	7.5	국지도로	71	전농동 60 - 166	전농동 60 - 335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1	대로3-11	◦ 도로 일부 선형변경 및 확폭 - 완화차로(B = 3m, L = 40m)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확폭
소로 2-	소로 2-	◦ 도로 일부확폭/종점명 오기정정 - 폭원 : 6~10m → 6~12m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일부 확폭 및 종점명 오기 정정
소로2-(1)	소로1-(1)	◦ 도로 확폭 및 연장 증가 - 폭원 : 8m → 10m - 연장 : 113m → 152m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확폭 및 연장 증가
소로2-(3)	소로2-(3)	◦ 도로 일부 선형 변경 ◦ 도로 기종점 및 연장 오기정정 - 연장 : 340m → 273m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일부 구간 선형 조정 및 시종점명 오기정정
-	소로3-1	◦ 도로 신설(보행자우선도로) - 폭원 : 7.5m / 연장 : 71m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신설

(2) 공공·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사회복지시설	전농동 60-19일대	-	증) 340.0	340.0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사회복지시설	◦ 신설 - 면적 : 340.0㎡	◦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신설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및 획지 번호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	23,464	전농동 60-22번지 일원	23,464	공동주택 (아파트)
B	340	전농동 60-19번지 일원	340	공공기여시설(노유자시설)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제2조 제13~14호)	공동주택
	불허용도	◦ 허용용도의 불허	
B	허용용도	◦ 공공기여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의 불허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계획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	공동주택	◦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B	공공시설	◦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용적률 계획

■ 용적률 결정조서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	기준용적률	◦ 190% 이하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 198% 이하	
	계획용적률	◦ 225% 이하	
B	계획용적률	◦ 200% 이하	공공시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및 기준

획지번호	구 분	완화 용적률	비 고
A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녹색건축인증우수 등급	8%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2.11.18)적용
	합 계	8%	

(3) 높이 계획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공동주택	◦ 최고높이 65m 이하, 최고층수 20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B	공공시설	◦ "건축 관련법령에 따름"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배 치	◦ 주동은 채광확보를 위한 가급적 남향 배치 ◦ 도시경관 및 바람길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수립
	형 태	◦ 판상형 위주 배치에 따른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시야확보 및 랜드마크 부여 ◦ 가로변 시각통로 확보 및 고층부 개방감 부여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유채색 계통으로 주변과의 조화 유도 ◦ 주변 경관과 조화된 재료 선택 유도
	건축선	◦ 도로경계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5m를 지정하여 향후 정온한 주거환경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대지내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위 치	비 고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B = 3 ~ 5m)	◦ 획지(A) 경계부 (결정도 참조)	상시개방 형태
공공보행통로	◦ 지역 주민의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계획 (B = 6m)	◦ 동서방향 1개소 (결정도 참조)	상시개방 형태

■ 공공시설 부담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공시설 등 조성 및 제공	◦ 순부담률 : 2,699.3㎡ (10.4%) - 도 로 : 2,176.0㎡ (8.4%) - 공공시설 : 523.3㎡ (2.0%) 〈토지 > 340.0㎡ (1.3%) + 〈환산부지면적 > 183.3㎡ (0.7%)	※ 측량성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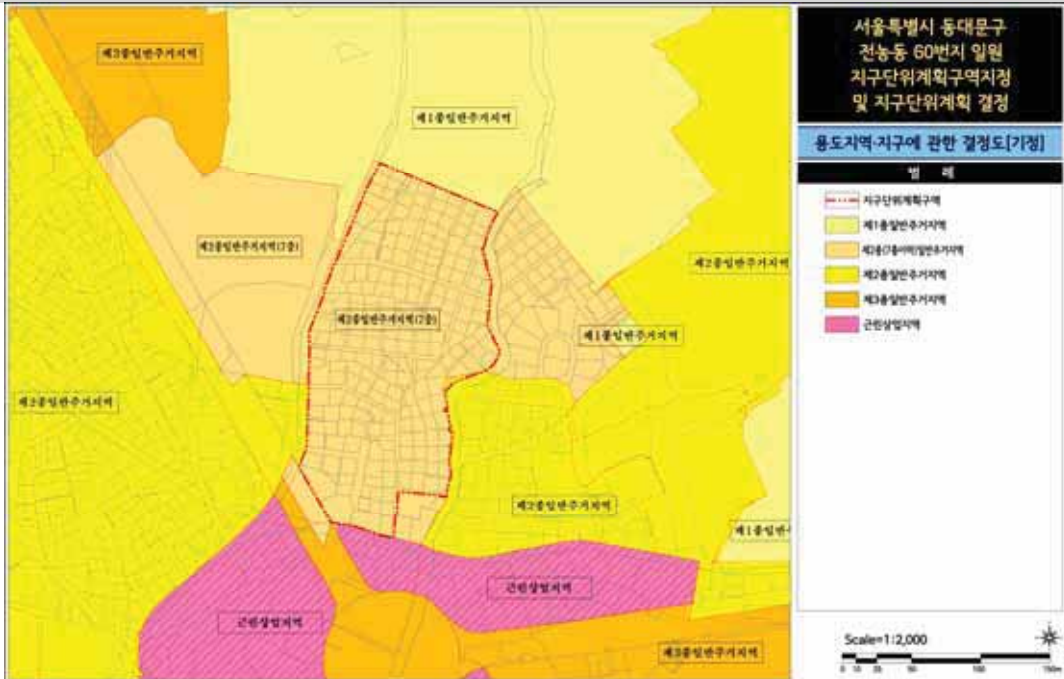
IV.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 - 2133 - 7865)와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 - 2127 - 4946)에 관련도서를 비치합니다.

V.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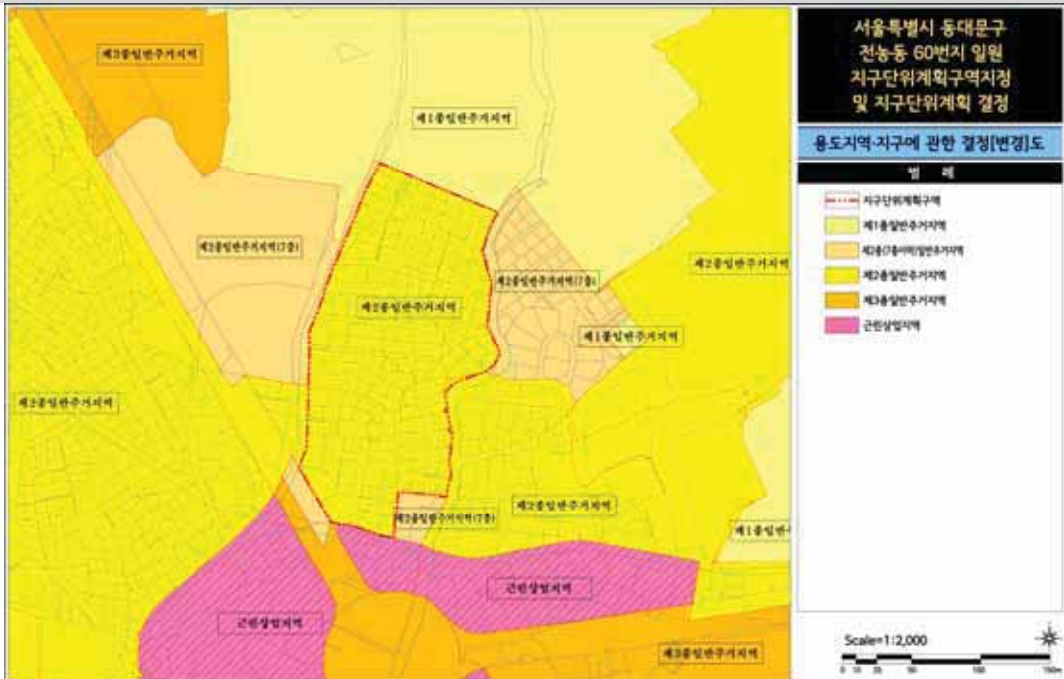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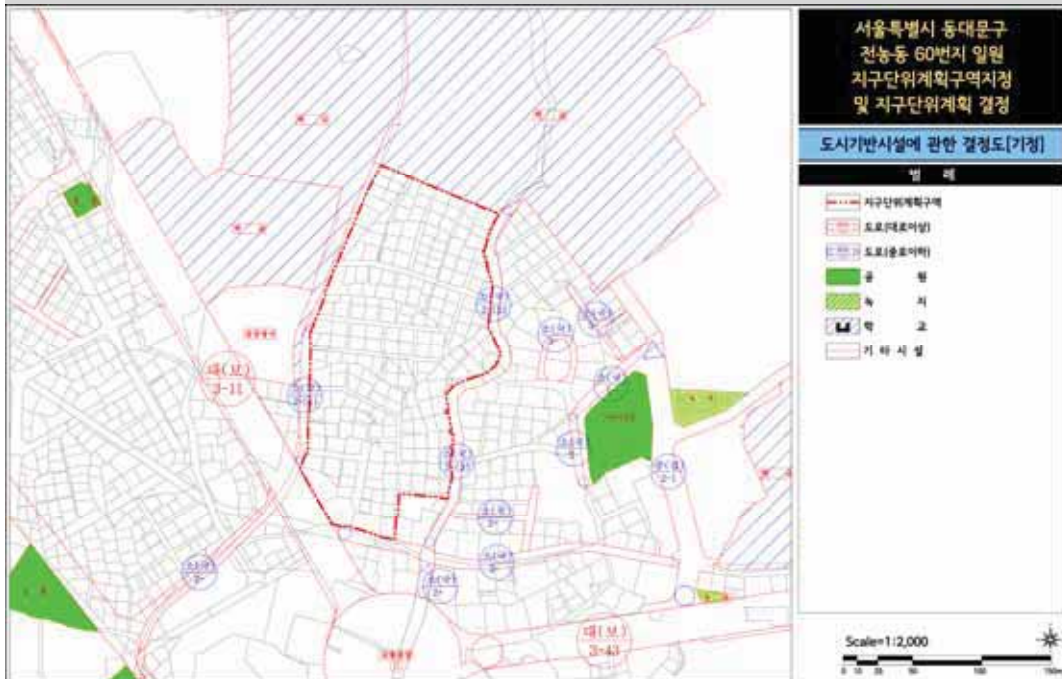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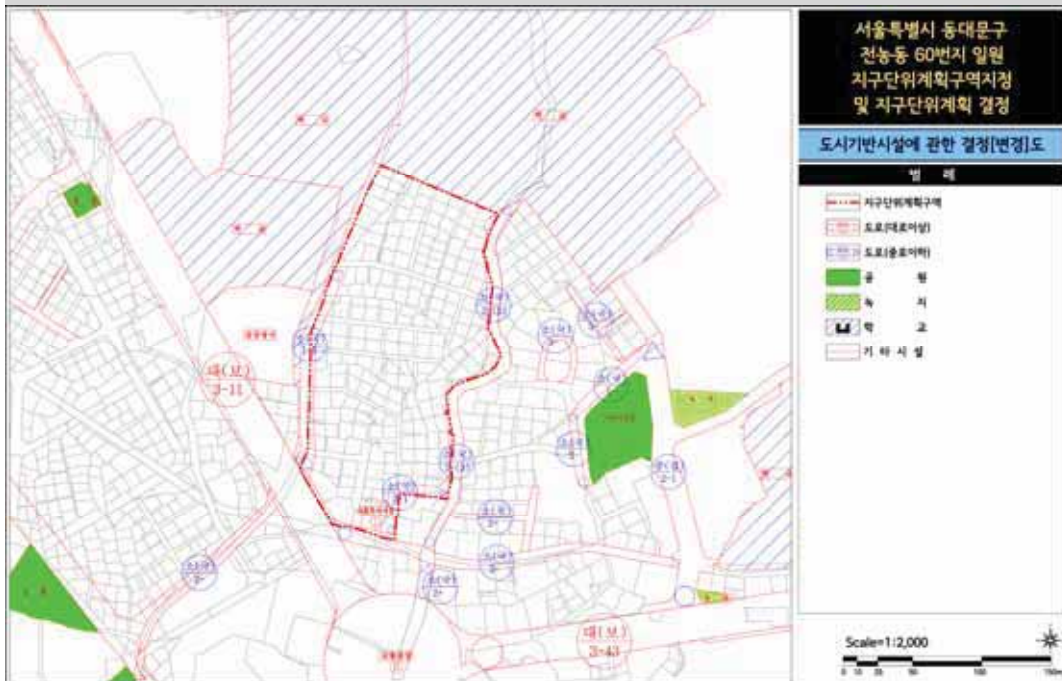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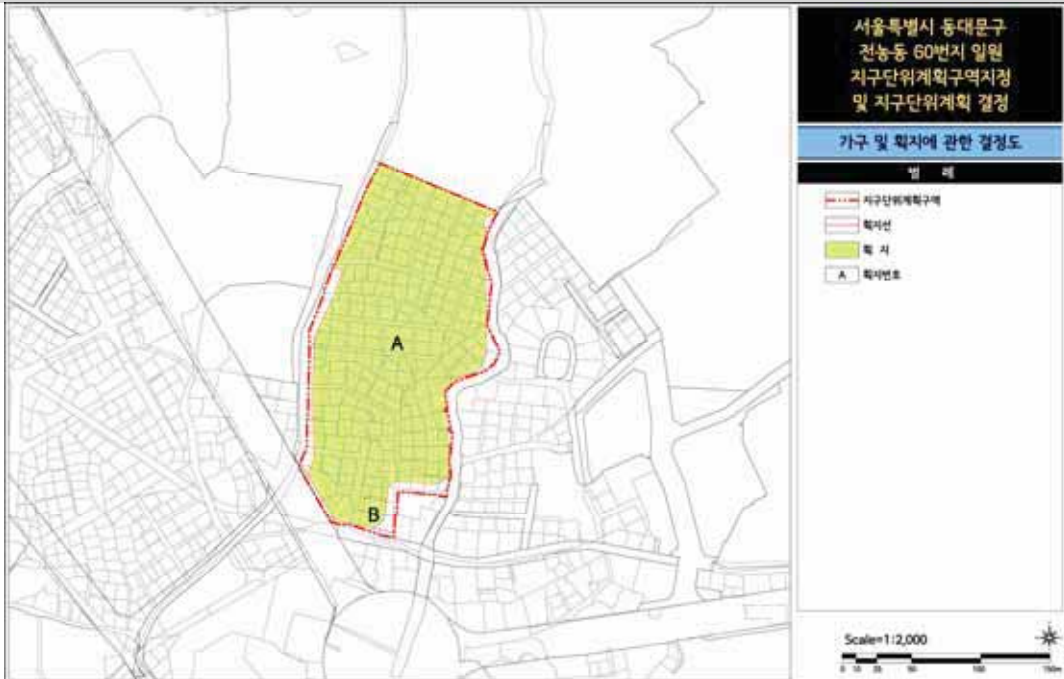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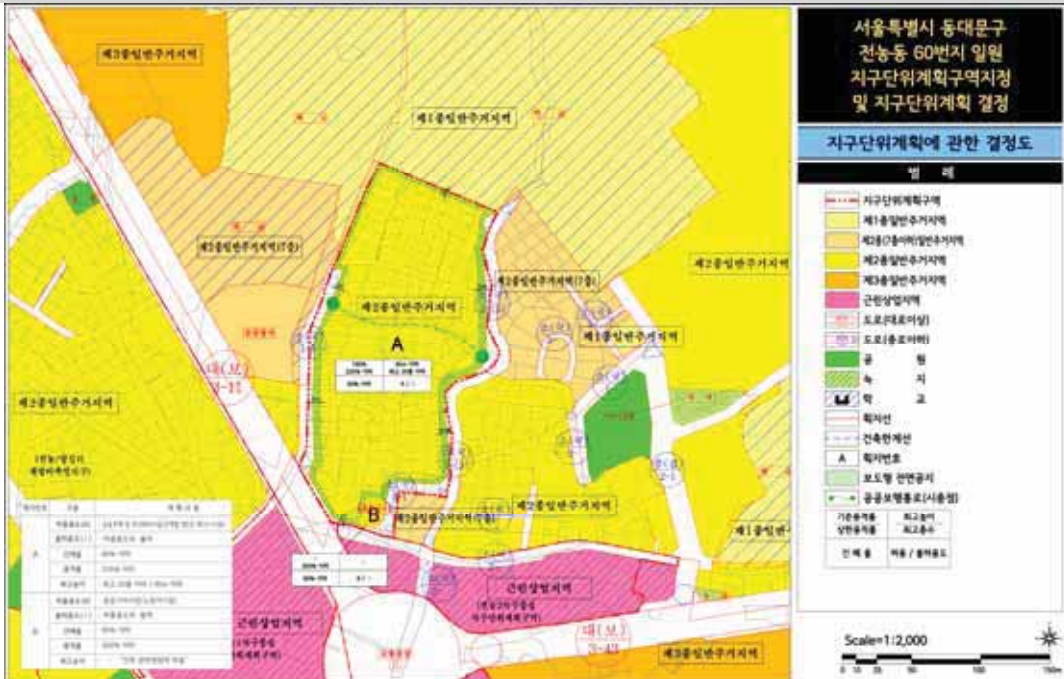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 - 116호(2010.04.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 - 384호(2010.11.0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 - 394호(2011.12.22.) 및 제2013 - 18호(2013.01.24.)로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 104호(2017.03.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 154호 (2017.04.27)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 - 185호 (2018.06.1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 - 287호(2021.06.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656호(2021.12.02.)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 사업지(1공구) 내 공공주택 부지 선정 및 환기소 이전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782호(2023. 3. 23.)로 열람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 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 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가. 도시관리계획(변경)

1.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25	12 ~34	보조간선 도로	4,801	관악구 신림동 566 (광로3-19)	관악구 봉천동 256 (대로3-208)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 2010-116 (2010.4.1)	중복결정 (공원)
변경	대로	3	225	12 ~34	보조간선 도로	4,801	관악구 신림동 566 (광로3-19)	관악구 봉천동 256 (대로3-208)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 2010-116 (2010.4.1)	중복결정 (공원)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 3-225	○ 도로 면적 : 104,866㎡ → 109,933㎡(증 5,067㎡, 4.83%) · 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 면적: 5,792㎡ → 10,859㎡(증 5,067㎡)	○ 환기소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5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관련도면 : 별첨

2. 공간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61	신림	근린공원	관악구 신림동 1707-1 일대	85,144.2	건고1977-138 (1977.07.14.)	도로 중복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시흥IC ~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 입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왕복 4차로, 연장 5,5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금회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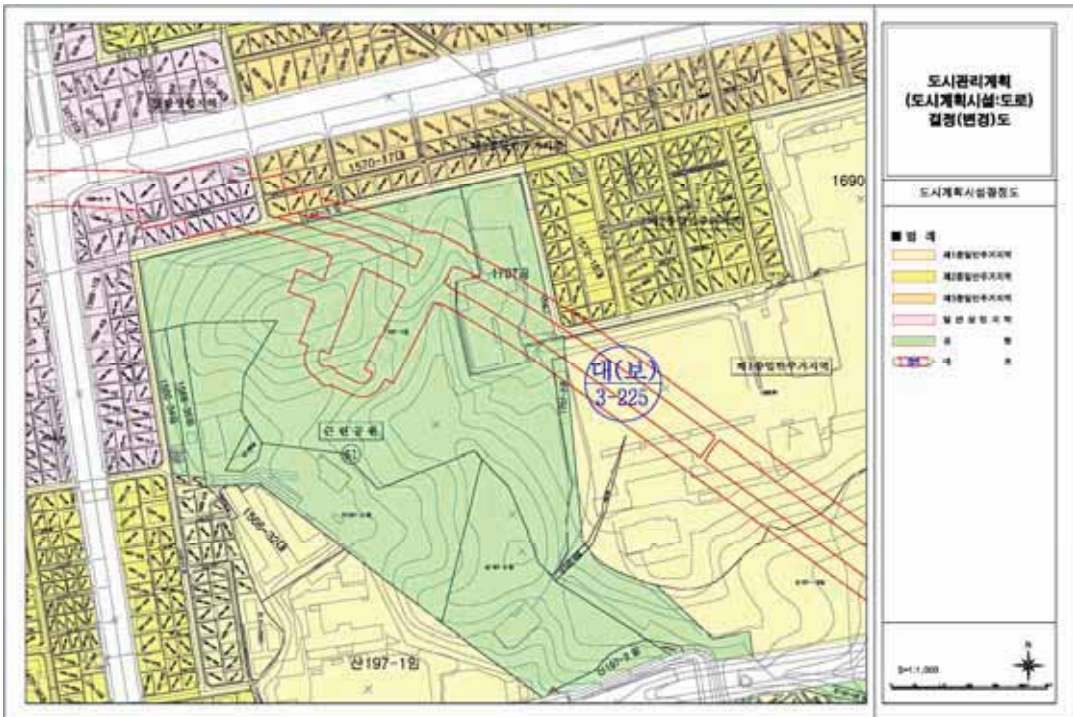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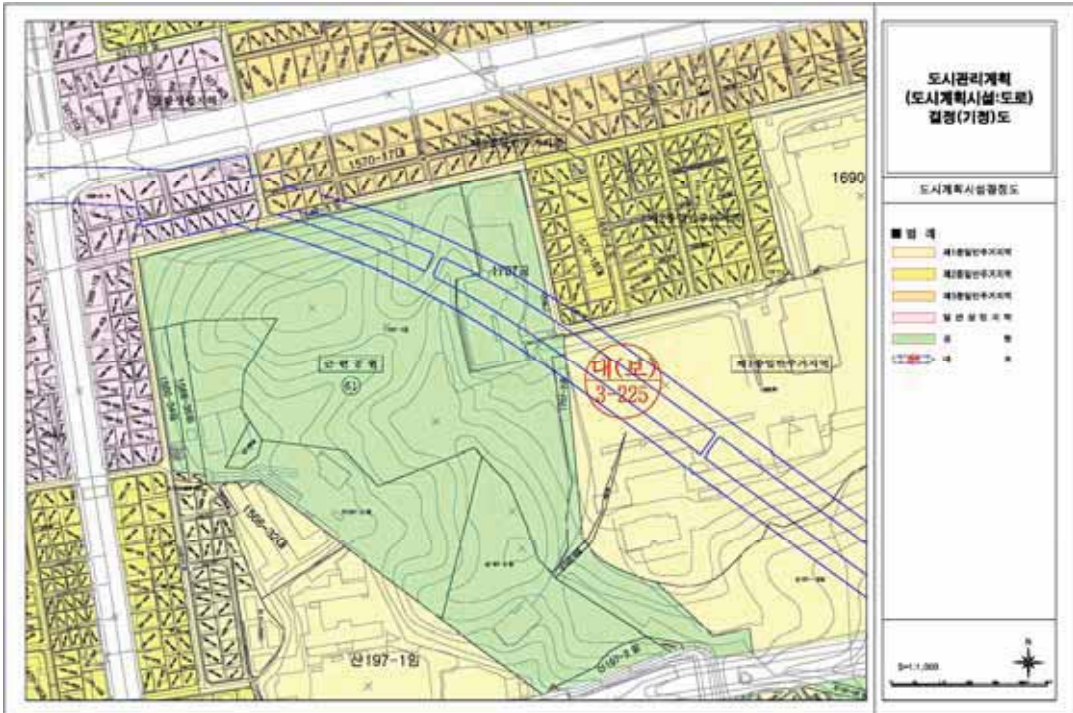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8. 지형도면(변경) : 별첨

9. 위치도 및 사업계획서 : 생략

10.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8077),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 02-6438-213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도



지형도면 고시도



수 용 토 지 조 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필지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 피 심 도	구 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역			
[관악구 신림동]															
1	추가	1707-1	공원	43,062.3	172	공원	재단법인 성보문화재단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0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구 분 지상권			1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현인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 피 심 도	구 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역				
[관악구 신림동]																
6	기정	1707 - 1	도로	43,062.3	3,871.0	공원	재단법인 성보문화재단	1707				구 분 지상권	6.74 ~22.4	-2.94 ~18.76		
	변경	1707 - 1	도로	43,062.3	8,766.0	공원	재단법인 성보문화재단	1707				구 분 지상권	6.74 ~40.5	-2.94 ~36.86		1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19호
도시관리계획(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251호(2020.6.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04.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된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893번지 일대	45,692.0	감) 31.7	45,660.3	서고시 제251호 (2020.06.25.)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 사유
변경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오차 정정(증 5.2㎡)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 미점유부지 신길동 1191-5번지 제척(감 36.9㎡)

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오차 정정(증 5.2㎡) : 국토교통부 연속지적도(’22.04.기준) 반영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45,692.0	감) 31.7	45,660.3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381.6	증) 5.2	43,386.8	9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426.4	감) 36.9	1,389.5	3.1	-
	제3종일반주거지역	884.0	-	884.0	1.9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사유
변경	메닉골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면적 변경에 따른 구역내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오차 정정 및 서울지방병무청의 미점유부지 제척)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4	13.5 ~15	보조 간선	1,650 (30)	영등포구 신길동 115-1	영등포구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	건고시 제2493호 (1966.06.21.)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나. 공간시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메닉골 근린공원	근린공원	영등포구 신길동 893번지일대	17,229.7 (2,384.7)	증)2,287.0	19,516.7 (4,671.7)	총독부고시 제208호 (1940.03.12.)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메낙골 근린공원	- 공원면적 변경 - 면적 : 17,229.7㎡→19,516.7㎡ (증 2,287㎡)	신설된 신림선(서울지방병무청역)으로의 단절된 동·서 통행로를 연결하기 위한 공원 결정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 결정(신설)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가구 및 획지면적	행정동	지번	편입면적(㎡)	비 고
신설	1BL	- 1	34,613.2 (서울지방 병무청 일대)	신길동	산 28-3	940.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28-4	163.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28-5	753.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97-2	793.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97-3	135.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97-4	59.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97-5	54.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98-1	3,769.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98-3	35.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98-4	210.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99-5	94.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99-6	1,038.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99-8	98.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159-1	2,244.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산 165-4	560.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893	8,426.0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893-1	252.2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894	447.9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895	2,934.8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895-1	1,187.2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896	2,588.9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896-1	4,815.9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1191-3	12.5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1191-4	618.1	특별계획구역1
				신길동	1200-1	2,384.7	특별계획구역1
	2BL	- 1	11,047.1	신길동	143-4	110.3	특별계획구역2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가구 및 획지면적	행정동	지번	편입면적(㎡)	비 고
			(국방부 일대)	신길동	143-49 일부	485.9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9	396.4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10	906.5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13	58.7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14	52.4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15	574.5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16	4,650.0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17	219.4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18	1,990.9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19	507.2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20	17.5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21	150.7	특별계획구역2
				신길동	1795-31	926.7	특별계획구역2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1	영등포구 신길동 895-1 일대	-	증) 34,613.2	34,613.2	
	특별계획구역2	영등포구 신길동 1795-16 일대	-	증) 11,047.1	11,047.1	-

■ 특별계획구역 결정(신설)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특별계획구역1	특별계획구역 신설	• 시민이용공간이 최대한 확보된 공공청사(병무청) 신축 유도
	특별계획구역2	특별계획구역 신설	• 시민이용공간이 최대한 확보된 국방부 상징공간 조성 유도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 신설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침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국방부 부지
	특별계획구역1	특별계획구역2
면적	34,613.2㎡	11,047.1㎡
토지이용	시민이용공간이 최대한 확보된 공공청사(병무청) 신축 유도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원 위치 변경 검토	시민이용공간이 최대한 확보된 국방부 상징공간 조성 유도
	※ 시민이용공간은 각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60% 이상 확보토록 함.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공원면적은 별도 산정한다.)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 검토	
용도 계획	허용용도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권장용도	• 업무시설(병무청),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 허용 및 권장용도 외 불허
밀도 계획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준용
	용적률	• 용적률 체계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높이	• 향후 구체적 건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
배치 계획	건축한계선	• 지침도에 따름(10m)
	건축물형태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공공보행통로		• 동-서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폭원 10~15m)
		• 남-북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폭원 5m)
운영기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민이용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청사의 외부 공간은 주변지역에 개방된 형태로 조성하며, 주변과 연계되어 하나의 시설로 보일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관리방안(시설계획과 - 14393, '20.12.)」을 준수한다.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토지이용(시민이용공간 규모), 용도계획 등 계획지침 전체]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조정이 가능하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특별계획구역1 내 공원의 위치는 주변 공원, 시민이용공간, 공공보행통로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및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정하여야 한다. - 특별계획구역1의 유연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획지분할가능선 지정 및 획지분할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 - 시민이용공간 설치 및 상징공간 조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따라야 한다.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할 수 있다.	

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가.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신설) 조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씬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의 변경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미한 사항의 처리는 자치구청장이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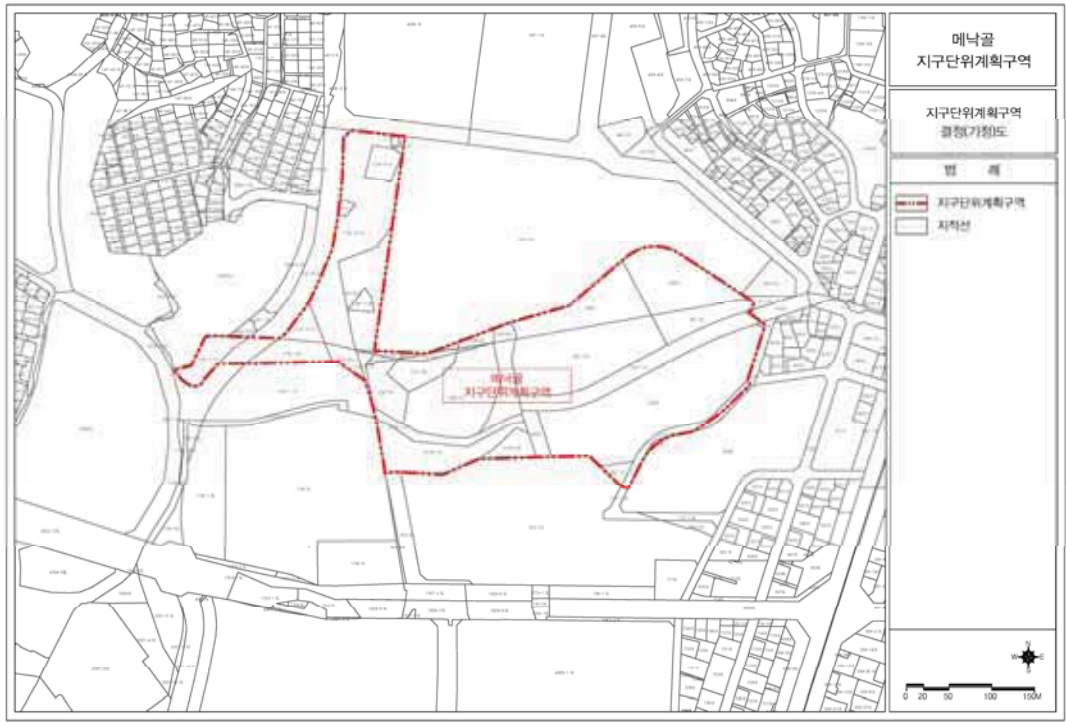
I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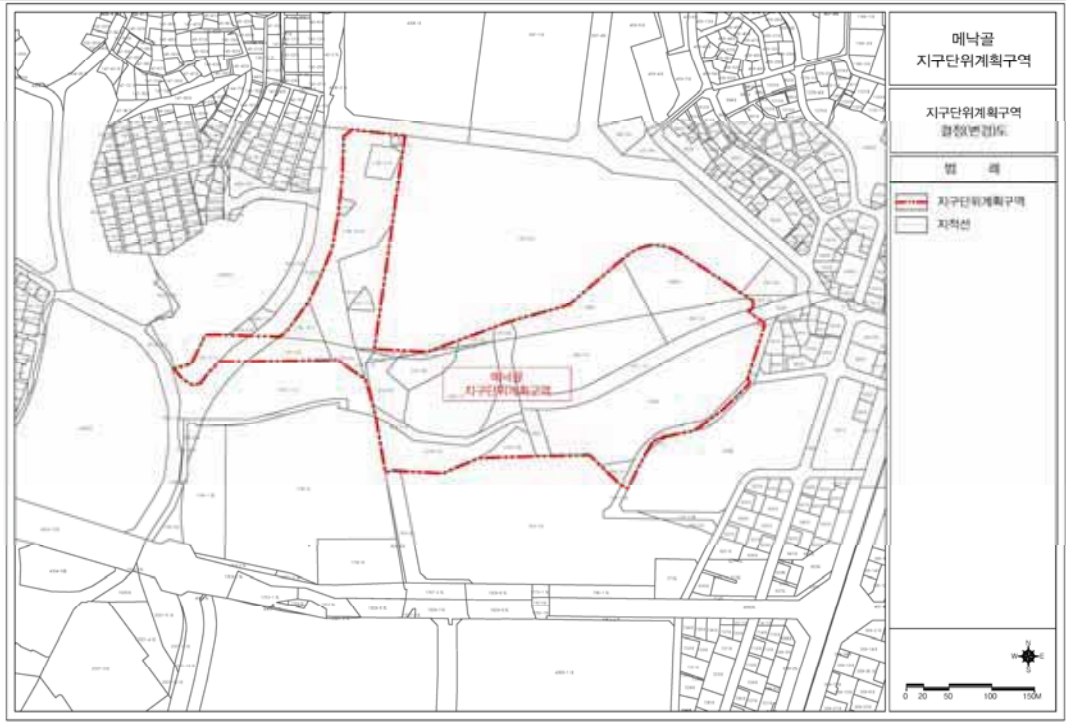
IV.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57)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50)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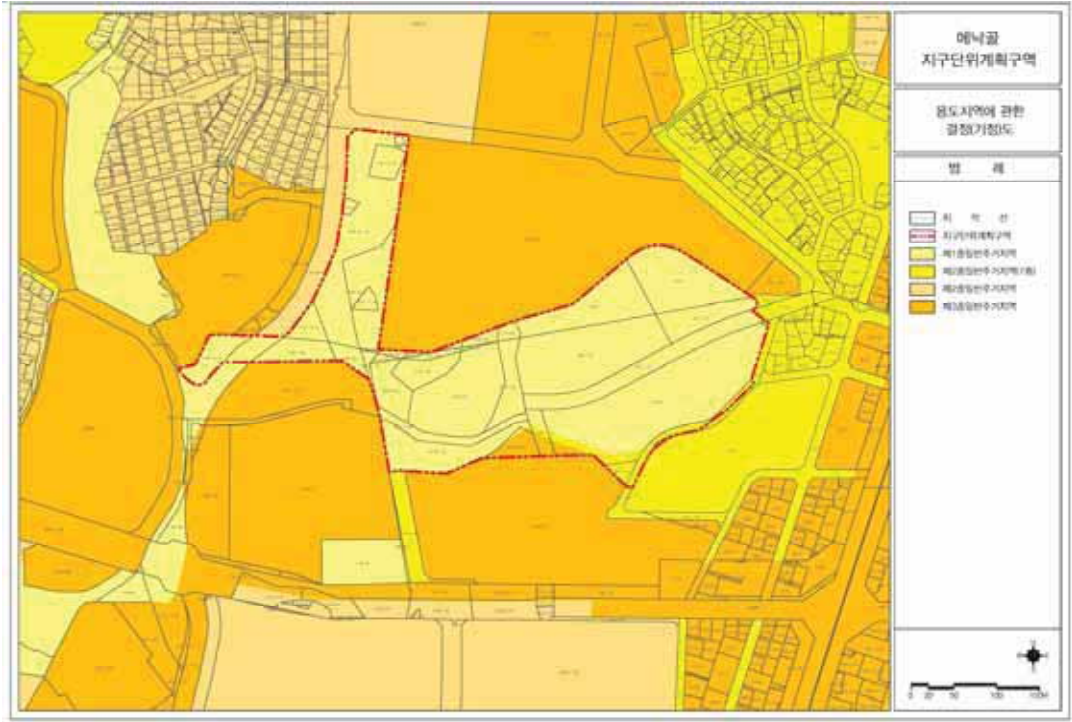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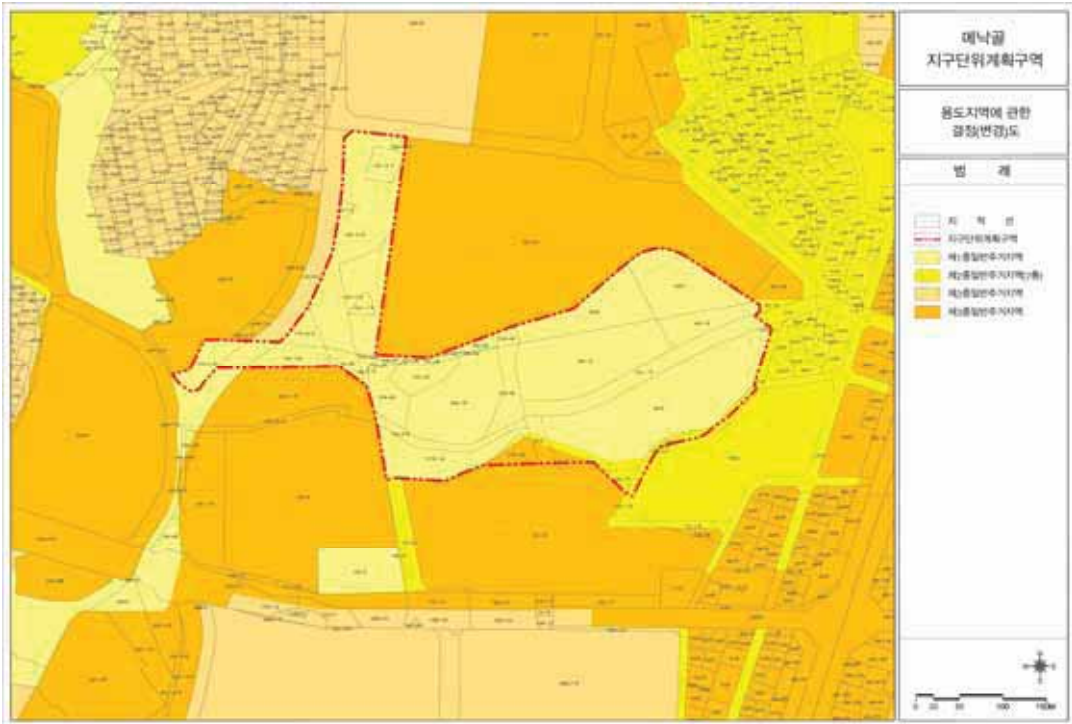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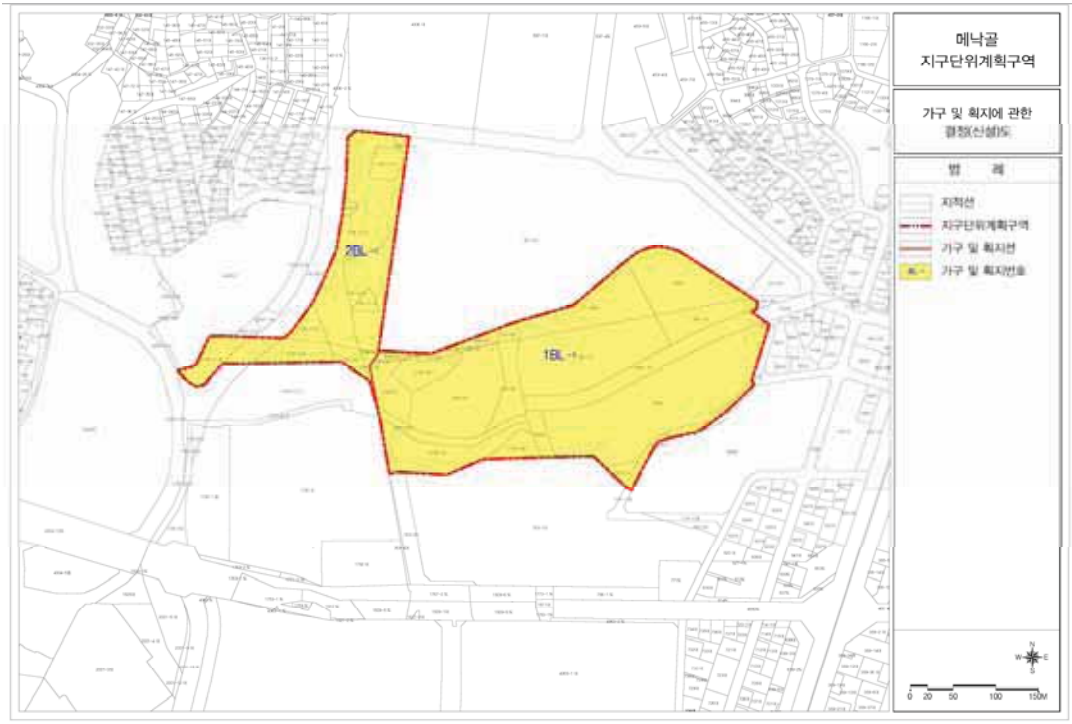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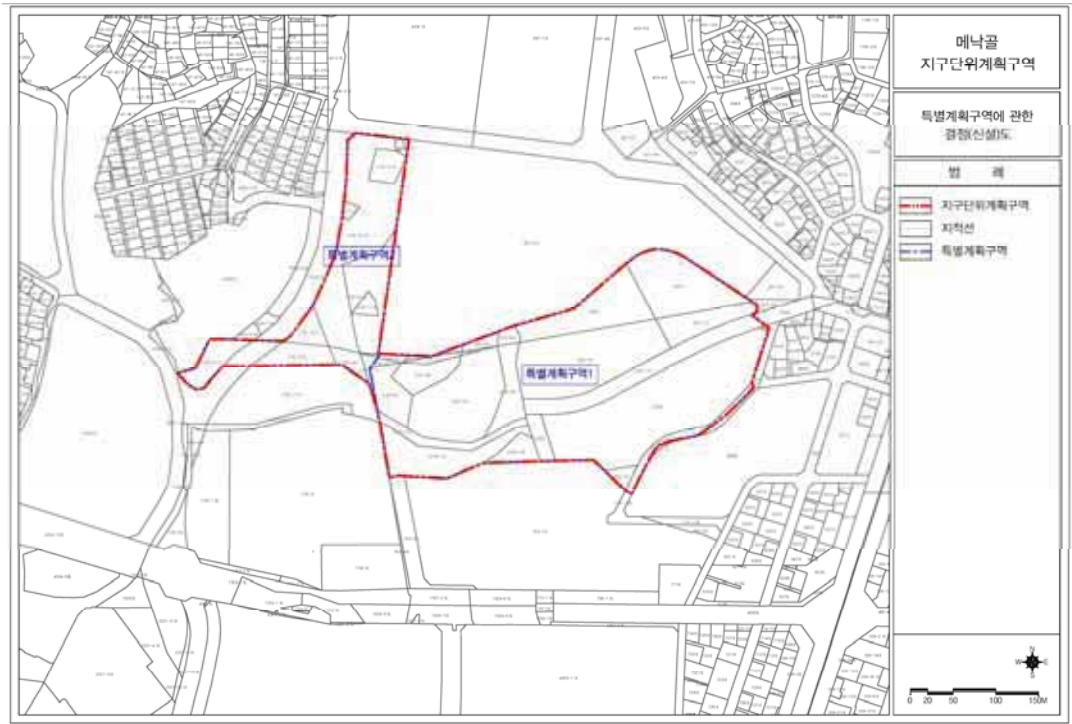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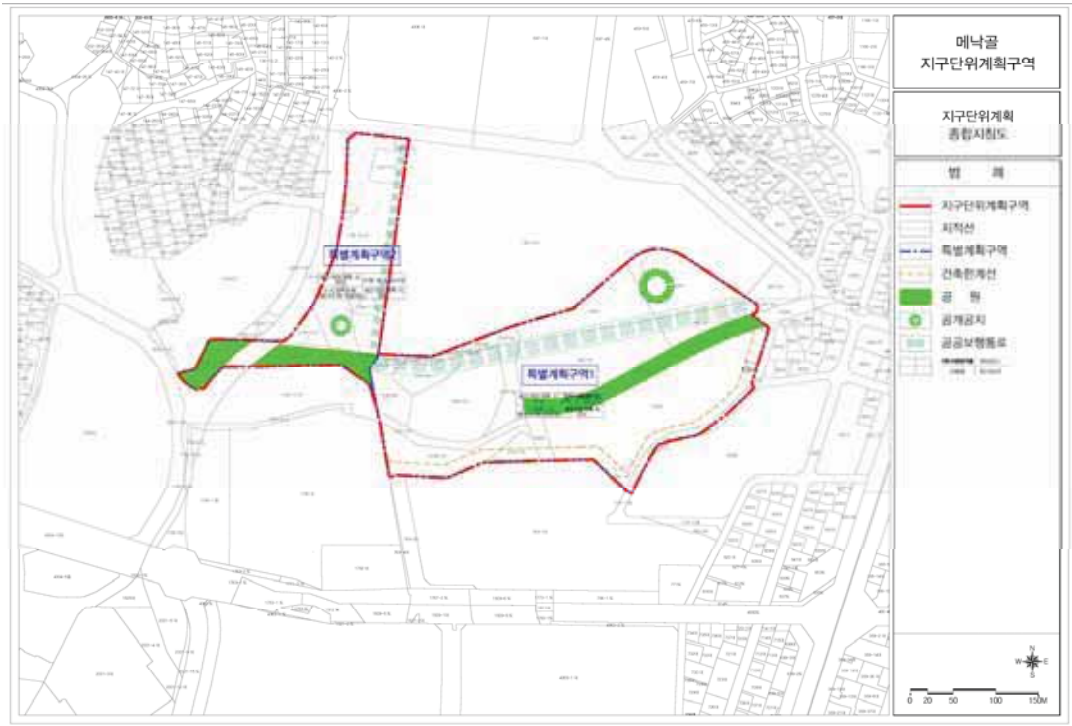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신설)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0호

**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69호(2022.2.17.)로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일원
- 면 적 : 7,071.0m²

2. 촉진지구 지정일 : 변경 없음

3. 사업의 종류 : 변경 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정]

- 명 칭 : 주식회사 케이미트
- 대표자 성명 : 차상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90665

[변경]

- 명 칭 : 주식회사 노량진케이미트대한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자 성명 : 남궁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8418570

■ 변경사유: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변경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토지세목조서[변경]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9-6	대	5,158	5,158	주식회사 케이미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9-6	100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새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여의도중앙대기업 금융센터)	근저당권	-
2		13-22	대	420	420							
3		13-19	도	242	242							
4		17-2	잡	282	282							
5		18	잡	114	114							
6		19-20	잡	406	406							
7		19-5	수	9	9							
8		19-23	잡	1,290	440	동작구	-	100	-	-	-	-
합 계				7,921	7,071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9-6	대	5,158	5,158	주식회사 노량진케이미트대 한제4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100	-	-	-	-
2		13-22	대	420	420							
3		13-19	도	242	242							
4		17-2	잡	282	282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5		18	잡	114	114							
6		19-20	잡	406	406							
7		19-5	수	9	9							
8		19-23	잡	1,290	440	동작구	-	100	-	-	-	-
합 계				7,921	7,071	-						

■ 변경사유: 소유권 변경에 따른 변경

2) 물건조서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7) 및 동작구청 주택과(☎02-820-99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정]

- 명 칭 : 주식회사 케이미트
- 대표자 성명 : 차상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90665

[변경]

- 명 칭 : 주식회사 노량진케이미트대한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자 성명 : 남궁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8418570

■ 변경사유: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변경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변경 없음

4.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 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변경 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 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라) 공공기여계획 : 변경 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게재 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 : 변경 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1) 토지세목조서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9 - 6	대	5,158	5,158	주식회사 케이미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9 - 6	100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새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여의도중앙대기업 금융센터)	근저당권	-
2		13 - 22	대	420	420							
3		13 - 19	도	242	242							
4		17 - 2	잡	282	282							
5		18	잡	114	114							
6		19 - 20	잡	406	406							
7		19 - 5	수	9	9							
8		19 - 23	잡	1,290	440	동작구	-	100	-	-	-	-
합 계				7,921	7,071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9-6	대	5,158	5,158	주식회사 노량진케이미트대 한제4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100	-	-	-	-
2		13-22	대	420	420							
3		13-19	도	242	242							
4		17-2	잡	282	282							
5		18	잡	114	114							
6		19-20	잡	406	406							
7		19-5	수	9	9							
8		19-23	잡	1,290	440	동작구	-	100	-	-	-	-
합 계				7,921	7,071	-						

■ 변경사유: 소유권 변경에 따른 변경

- 2) 물건조서 : 변경 없음
- 3) 토지취득방법 : 변경 없음
-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변경 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70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동작구 노량진동 19 - 6번지 외 7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처리하고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동작구 노량진동 19 - 6번지 외 7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

구 분	명 칭	대표자	주 소
기 정	주식회사 케이미트	차상협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변 경	주식회사 노량진케이미트대한 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남궁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1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5. 사업개요(변경없음)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노량진동 19 - 6 외 7필지
 - 나. 대지면적 : 7,071.00㎡
 - 다. 건 폐 율 : 38.45%(건축면적 : 2,446.69㎡)
 - 라. 용 적 율 : 867.72%(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5,221.77㎡)
 -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418세대/민간임대 422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사무소
 - 바. 규 모 : 2개동, 지하7층/지상43층, 연면적 80,804.72㎡
 -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신고

6. 기타사항

-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3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808	23. 5. 19.	주식회사 화인폰 김동현 110111-30846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801호(가산동)
2	203809	23. 5. 19.	아우토크립트 주식회사 (Autocrypt Co.,Ltd.) 김의석 110111-72137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B1,1,6,7,8층(여의도동)
3	203810	23. 5. 19.	주식회사 유포러스 최인연 110111-49129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2, 창미빌딩 4층(성수동2가)
4	203811	23. 5. 19.	주식회사 유큐브 김정범 200111-05948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4길 18, 경풍빌딩 3층(역삼동)
5	203812	23. 5. 19.	이지씨엔티 주식회사 이종기 110111-83703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29, 3층(사당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35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1	합병된 법인	203276	주식회사 에이치알정보통신 오민영 110111-7499547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68길 9, 102호(중곡동)	23. 5. 19.	법인합병
	합병된 법인	-	주식회사 플루멘코리아 (FLUMEN KOREA Co.,Ltd.) 오민영 110111-845949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24, 가양역데이양플렉스지식산업센터 제2층 제211호(등촌동)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 법인	203276	주식회사 플루멘코리아 (FLUMEN KOREA Co.,Ltd.) 오민영 110111-845949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24, 가양역데이양플렉스지식산업센터 제2층 제211호(등촌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3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개 구역]

1.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계획(허용·지정)으로 결정한 전통찻집 등에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를 허용토록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 :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사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허용용도 계획 결정(변경)(안)
 - ▶ 변경내용 : 전통음료 등 전통음식제조·판매점 내 커피판매 허용
 -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지정용도 계획 결정(변경)(안)
 - ▶ 변경내용 : 전통찻집의 정의 내 커피판매 허용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서울시청 한옥정책과(☎2133-5577)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41호

과학관 등록 공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한 과학관을 같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등록연월일 : 2023. 5. 23.
2. 등록번호 : 제 서 - 17호
3. 명 칭 : LG디스커버리랩 서울
4.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5. 대 표 자 : 강유식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7. 규 모 : 전시실 1,262㎡, 연구실 87㎡, 자료실 53㎡, 강당 176㎡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자 : 이주영(02 - 2133 - 534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4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후 재산(부동산)압류 통지를 소유자에게 송달해야하나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1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664880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3길 17(합정동 371-23)	수도요금	2022. 3 등 7납기	7회	599,74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불가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1-23 토지, 건물	김명화	530826-2***** (사망발소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3길 17(합정동)	599,740	2023. 5.23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규(☎02 - 3146 - 35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5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
020976235	강서구 까치산로 124 (화곡동)	상하수도 요금	' 22.6월 외 4건	5회	1,489,62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24 (화곡동)	전0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1다길 41, 지하1층 101호 (화곡동)	1,489,620원	2023년 6월 19일

4. 공고기간 : 2023. 6. 1. ~ 6. 15. (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공고기간 내 체납금 미납 시 압류처분이 실시됩니다.
-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영근(☎ 02 - 3146 - 3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53호

공시송달(비영리민간단체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의2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말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3. 처분의 법적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 2
4. 처분대상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개의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음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영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4길 1, 신정학마을2단지	김영석	2005-01-15

5. 말소일자 : 2023. 05. 23.(화)
6.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 및 서울시청 누리집
7. 기타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담당 : 신민경, ☎ 2133-510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78호(1972.03.0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건설부고시 제6호(1972.05.22.)로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265호(2020.06.25.)로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120호(2021.03.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426호(2021.08.05.)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218호(2022.05.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535호(2022.12.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현릉로 확장’ 사업에 대한 토지 및 물건조서를 변경(보완)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 등 일반에게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은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현릉로 확장
-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내곡IC ~ 강남구 세곡동 현릉IC
-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폭 6~8차로 → 8~10차로, 연장 1.46k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별도 첨부
- 7) 위 치 도(변경없음)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8) 지형도면(변경없음)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9) 사업계획서(변경없음)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나. 열람 일시 및 장소

- 1) 열람 일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09:00~18:00)
- 2)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807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02-6438-2161)

토 지 조 서

[서초구 내곡동]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파일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89,759							
1	1-1680	도	6,687.0	1273.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2	1-3048	도	2,674.0	1527.0	국	국						기존 도로
3	1-1699	전	102.0	17.0	이계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66번길 29, 3층(인계동)	단독 소유	수원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신로 134 (교동)(관선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4	1-297	도	8,836.0	7413.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5	1-3244	도	2,654.0	2654.0	국	국도교통부						기존 도로
6	산12-777	임	301.0	301.0	국	기획재정부						
7	1-3231	도	91.0	91.0	공	서초구						
8	1-3199	답	245.0	245.0	박순홍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103 (문원동)	단독 소유					
9	1-1706	도	8,738.0	8738.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0	1-3233	답	188.0	188.0	석근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로길 13(영곡동)	단독 소유	영동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양재동)	근저당권		
11	1-3200	답	523.0	523.0	이창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곡로3길 21, 503동 303호(사곡동, 엘에이치강남힐스테이트)	단독 소유	영동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양재동)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남역삼지점)	근저당권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역삼동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영등포 금융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양재동)	근저당권 /지상권	
12	1-3201	전	437.0	437.0	이창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503동 303호(자곡동, 엘에이저간힐스테이트)	단독 소유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남역삼지점)	근저당권	기존 도로
13	1-3245	도	161.0	161.0	공	서초구					기존 도로
14	1-700	전	79.0	79.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5	1-3205	전	1,568.0	1568.0	박종진 박종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평대로14길 12, 101동 403호 (반포동, 반포에스케이비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주로 118, 2동 1002호(도곡동, 우성캐리타199.)	1/2 1/2				기존 도로
16	1-2956	도	459.0	459.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7	산12-784	임	165.0	165.0	박종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8-11	단독 소유				기존 도로
18	산12-411	천	15,549.0	331.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9	산12-720	천	209.0	209.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20	산12-729	도	375.0	375.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21	산12-783	임	690.0	690.0	정옥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6-13 방배서리골 이-편안세상 107-204	단독 소유				기존 도로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1-3203	대	270.0	270.0	심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 1-676	단독 소유				기존 도로
23	1-680	전	408.0	392.0	심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 1-676	단독 소유				기존 도로
24	산12-781	임	2,798.0	2798.0	박순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8-11	4/18				기존 도로
					김금숙	서울 강남구 반포동 산8-2	3/18				
					박순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삼성아파트 103-302	4/18				
					박진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8-11	4/18				
25	산12-725	도	514.0	514.0	장옥임	서울 강남구 반포동 산8-2	3/18				기존 도로
					국	국토교통부					
26	1-3214	전	33.0	33.0	홍지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9길 18-14, 202호(성내동)	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남경민	서울특별시 중구 창계천로 400, 104동 2103호(황학동, 롯데캐슬베치아)	1/2				
27	1-2964	도	72.0	72.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28	1-3198	전	298.0	298.0	박경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106동 1402호(영배동, 래미안영배아파트)	단독 소유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29	1-2950	도	597.0	597.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30	1-2951	도	138.0	138.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31	산12-789	도	228.0	228.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2	1-2965	도	1.0	1.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33	1-3215	전	8.0	8.0	홍지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9길 18-14, 202호(성내동)	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남경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0, 104동 2103호(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1/2				
34	1-670	전	4.0	4.0	홍지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9길 18-14, 202호(성내동)	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남경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0, 104동 2103호(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1/2				
35	1-731	도	198.0	198.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36	1-2952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37	1-3202	답	6.0	6.0	홍지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9길 18-14, 202호(성내동)	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남경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0, 104동 2103호(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1/2				
38	1-3239	천	165.0	165.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39	산12-782	임	7.0	7.0	박종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8-11	단독 소유				
40	산13-352	도	45.0	45.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41	산13-364	도	65.0	65.0	국	국토교통부					
42	산13-361	임	54.0	54.0	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43	산13-362	임	79.0	79.0	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평면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4	1-3021	도	9,572.0	9572.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45	1-292	도	954.0	954.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46	산13-363	도	65.0	65.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47	1-3022	도	659.0	659.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48	1-3025	도	234.0	234.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49	1-2646	도	80.0	80.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50	1-3204	전	36.0	36.0	국	기획재정부					기존 도로
51	1-3220	전	53.0	53.0	김명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 1-1448	단독 소유				기존 도로
52	산12-785	임	90.0	90.0	박종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8-11	단독 소유				기존 도로
53	1-3212	답	3.0	3.0	임경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응암로 37, 112동 1201호(한리아파트)	단독 소유				
54	1-3242	도	226.0	226.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55	산12-736	도	41.0	11.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56	산12-793	도	298.0	298.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57	산12-800	도	50.0	50.0	공	서초구					
58	산12-780	임	18.0	18.0	박종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8-11	66655/1 00252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평면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김금숙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8-11	33597/1 00252				
59	산12-465	도	7,035.0	7035.0	공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60	산12-798	임	231.0	231.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61	산12-797	임	11.0	11.0	국	국토교통부					
62	산12-796	임	713.0	713.0	국	국토교통부					
63	1-3197	도	46.0	46.0	국	국토교통부					
64	1-3210	도	25.0	25.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65	1-3211	도	201.0	201.0	국	국토교통부					
66	1-3226	도	179.0	179.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67	1-3224	도	18.0	18.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68	1-3241	도	1,117.0	1117.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69	1-3237	도	513.0	513.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0	1-3238	도	577.0	577.0	국	국토교통부					
71	1-3223	도	103.0	103.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2	1-1725	도	13.0	11.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평면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73	1-3227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4	1-3234	도	670.0	670.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5	1-3235	도	38.0	38.0	국	국토교통부					
76	1-3228	도	18.0	18.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7	1-3229	답	40.0	40.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8	산12-791	도	289.0	289.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9	1-3206	답	16.0	16.0	국	국토교통부					
80	1-3230	도	75.0	75.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81	1-3219	도	98.0	98.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82	1-3243	도	90.0	90.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83	산12-739	도	123.0	81.0	국	서초구					기존 도로
84	1-3232	도	13.0	13.0	공	서초구					기존 도로
85	산12-801	도	13.0	13.0	공	서초구					기존 도로
86	산12-794	도	441.0	441.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87	1-3248	도	25.0	25.0	공	서초구					기존 도로
88	1-3247	도	3.0	3.0	국	서초구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평면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9	산13-254	임	272.0	272.0	공공	서울특별시					
90	1-3207	도	117.0	117.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91	1-3208	도	29.0	29.0	국	국토교통부					
92	1-3249	도	6.0	6.0	공공	서초구					
93	산12-779	임	2,860.0	2,860.0	김병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5길 2, 13동 802호(방배동, 삼호아파트)	3314245 /116930 400				기존 도로
					박병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17, 104동 802호 (대치동, 포스코더샵아파트)	1461630 /116930 400				
					박병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17, 104동 802호 (대치동, 포스코더샵아파트)	1461630 /116930 400				
					변익성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4 셋별마을 109-101	1461630 0/11693 0400				
					살바테즈 미영	미합중국 미네소타주 알버트리스 켄스로 1101	5846520 /116930 400				
					이강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효자촌 108-202	584652/ 1169304 00				
					이미영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8-40, 108동 1702호 (다산동, 힐스테이트 황금산)	3314245 /116930 400				
					이병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50, 204동 1501호 (구미동, 무지개마을)	7205840 /116930 400				

이전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평면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이상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동로2길 23, 2층 (일도아동)	1315467 /116930 400				
					이상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26동 1302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1607793 /116930 400				
					이상익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 신반포14차아파트 217 - 714 400	5846520 /116930 400				
					이상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4 - 904 400	5846520 /116930 400				
					이숙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56, 105동 2001호 (다산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3314245 /116930 400				
					이영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56, 105동 2001호 (다산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3314245 /116930 400				
					이정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01번길 17, 108동 202호(서현동, 호지촌)	1169304 /116930 400				
					이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8, 409호(역삼동, 강남역두산위브세티움)	5846520 /116930 400				
					이현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01, 402동 801호(문당동, 셋별마을)	1169304 /116930 400				
					이희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 - 4 진주아파트 1 - 305 400	5846520 /116930 400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식회사 에버서버 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30, 502호(서초동, 서초성우빌딩)	7308150 /116930 400				
					주식회사 구월테크 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30, 102호(서초동, 서초성우빌딩)	7308150 /116930 400				
					홍영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19-1 경남아파트 104 - 302	2923260 0/11693 0400				
94	산12 - 570	수	215.0	215.0	공	서울특별시					
95	산12 - 786	구	569.0	569.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96	1 - 202	도	1,468.0	956.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97	1 - 3019	도	2,850.0	125.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98	1 - 200	도	179.0	179.0	국	기획재정부					기존 도로
99	1 - 295	도	53.0	53.0	국	기획재정부					기존 도로
100	1 - 2955	도	43.0	43.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01	1 - 2990	도	248.0	248.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02	산12 - 732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03	1 - 1712	도	714.0	714.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04	산12 - 730	도	54.0	54.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평면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05	1-1716	도	165.0	165.0	공	서울특별시					기전 도로
106	1-2953	도	138.0	138.0	국	국토교통부					기전 도로
107	산12-723	도	121.0	121.0	국	국토교통부					기전 도로
108	1-2954	도	313.0	313.0	국	국토교통부					기전 도로
109	산12-724	도	185.0	185.0	국	국토교통부					기전 도로
110	1-3020	도	119.0	119.0	공	서울특별시					기전 도로
111	1-1709	도	20.0	20.0	김명수	서울 강남구 내곡동 1-1448	단독 소유				기전 도로
112	1-2645	도	113.0	113.0	공	서울특별시					기전 도로
113	1-2694	도	483.0	483.0	공	서울특별시					기전 도로
114	산12-619	도	29.0	29.0	국	서울특별시					기전 도로
115	산12-623	도	105.0	105.0	공	서울특별시					기전 도로
116	산12-733	도	28.0	28.0	국	국토교통부					기전 도로
117	산12-726	천	645.0	645.0	국	서울특별시					기전 도로
118	1-2989	천	18.0	18.0	공	서울특별시					기전 도로
119	산12-727	천	26.0	26.0	공	서울특별시					기전 도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20	산12-467	도	5,217.0	5217.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21	1-1715	답	1.0	1.0	백승현	경기도 과천시 부림4길 64, 지층 2호 (부림동)	13/15	서울특별시 시서초구		압 류	기존 도로
								김옥윤		가등기	
								서울특별시 시서초구		압 류	
								김옥윤		가등기	
122	1-64	답	557.0	557.0	백승현	경기도 과천시 부림4길 64, 지층 2호 (부림동)	13/15	서울특별시 시서초구		압 류	기존 도로
								김옥윤		가등기	
								서울특별시 시서초구		압 류	
								김옥윤		가등기	
123	1-1698	도	56.0	56.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24	1-2721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25	산12-742	임	34.0	11.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26	1-3221	도	104.0	104.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27	1-1717	도	678.0	678.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28	1-3218	도	71.0	71.0	국	기획재정부					기존 도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29	1-3222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30	1-1720	도	956.0	956.0	국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31	산12-463	도	288.0	288.0	국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32	1-1734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33	1-1733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34	1-3217	도	128.0	128.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35	1-749	도	731.0	731.0	국	기획재정부					기존 도로
136	1-3216	도	417.0	417.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37	1-751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38	1-2384	천	95.0	95.0	국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39	산12-788	도	487.0	487.0	홍기득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90-1 우성아파트 5동 601호	1/4				기존 도로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3/4				
140	산12-441	도	4,066.0	4066.0	국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41	1-1722	천	43.0	43.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42	1-2389	천	377.0	377.0	국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3	1-1742	천	30.0	30.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44	1-1741	도	155.0	155.0	국	재무부					기존 도로
145	산13-250	도	1,388.0	1388.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46	1-1730	도	30.0	30.0	최세귀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17-25	단독 소유				기존 도로
147	1-1726	도	4,196.0	4196.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48	1-1736	도	708.0	708.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49	산12-443	도	397.0	397.0	홍기득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90-1 우성아파트 5동 601호	1/4				기존 도로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3/4				
150	1-1740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51	산12-664	도	50.0	50.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52	1-752	도	814.0	814.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53	1-2728	도	43.0	43.0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54	1-1703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55	1-3070	도	15.0	15.0	공	서초구					기존 도로
156	산12-719	도	110.0	110.0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57	산12-787	임	34.0	34.0	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58	산13-365	도	31.0	31.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강남구 세곡동]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20,779						
1	468-43	도	865.0	149.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	468-42	임	262.0	11.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3	산52-57	임	1,978.0	1,978.0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4	산52-55	임	1,094.0	1,094.0	주식회사 한국토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단독 소유				
5	산52-56	임	224.0	224.0	주식회사 한국토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단독 소유				
6	산52-52	임	16,514.0	4,558.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7	468-28	도	900.0	717.0	국	건설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8	475-17	도	73.0	73.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9	468-26	도	1,071.0	1,037.0	국	건설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및 내용	
10	389-5	도	6,854.0	6,361.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1	619	천	20,297.0	6.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2	274-1	천	1,769.0	16.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3	468-29	천	519.0	519.0	국	건설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4	산52-58	임	266.0	266.0	보안법인 행복마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9-2, 3층	단독 소유				기존도로
15	475-28	도	371.0	371.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6	475-18	담	64.0	64.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7	475-30	담	115.0	115.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8	468-30	도	592.0	592.0	국	건설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9	475-29	도	1,583.0	1,503.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0	산52-49	임	278.0	278.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1	산52-48	임	13.0	13.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2	475-31	도	7.0	7.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23	468-31	도	143.0	143.0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이전 부동산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평면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및 내용	
24	475-19	도	175.0	175.0	국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5	470-9	도	436.0	436.0	국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6	470-15	전	313.0	73.0	국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물 권 조 서

[서초구 내곡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FA)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1	내곡동 1-3199	비닐 하우스	철골루핑	48㎡	답	박순홍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103 (문원동)								
		비닐 하우스	철골루핑	156㎡											
2	내곡동 1-3233	비닐 하우스	철골루핑	64㎡	답	석근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안길 13(영곡동)	영동농공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양재동)	근저당권					
		비닐 하우스	철골루핑	54㎡											
		비닐 하우스	철골루핑	27㎡											
		창고	철골루핑	26㎡											
3	내곡동 1-3200	화원	철골루핑	333㎡	답	이창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503동 303호(자곡동, 엘에이저강남힐스테이트)	영동농공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양재동)	근저당권 /지상권					
		화원	철골루핑	77㎡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남역삼지점)	근저당권					
		화원	철골루핑	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역삼동충합금융센터)	근저당권					
4	내곡동 1-3201	창고	철골합석	29㎡	전	이창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503동 303호(자곡동, 엘에이저강남힐스테이트)	영동농공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양재동)	근저당권 /지상권					
		창고	철골합석	15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남역삼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역삼동충합금융센터)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EA)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내곡동 1-3205	화원	철골루핑	10㎡	전	박종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평대로14길 12, 101동 403호 (반포동, 반포에스케이뷰아파트)				
		화원	철골루핑	75㎡							
		화원	철골루핑	156㎡							
		화원	철골비닐	122㎡		박종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8, 2동 1002호(도곡동, 우성캐릭터199.)				
		화원	철골비닐	53㎡							
		지하장 납입장	철골루핑	194㎡							
6	내곡동 1-3198	화원	철골루핑	259㎡	전	박강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106동 1402호(양배동, 레이먼드베아트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화원	철골루핑	33㎡	전	국	기획재정부				
7	내곡동 1-3204	화원	철골루핑	87㎡	전						
		화원	철골루핑	87㎡							
8	내곡동 신12-785	화원	철골루핑	30㎡	임야	박종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8-11				
		상가	철골루핑	398㎡		김병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배로45길 2, 13동 802호(양배동, 삼호아파트)				
9	내곡동 신12-779	상가	철골목재	69㎡	임야	박병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17, 104동 802호 (대치동, 포스코더샵아파트)				
		상가	철골목재	35㎡		박병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17, 104동 802호 (대치동, 포스코더샵아파트)				
		펜스	철재 H=1.0m	12m		변익성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4 새별마을 109-101				
		정자				선반택조미 영	미합중국 미니스타주 알버트리지 전사로 1101				
				1EA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EA)	실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이강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호저촌 108-202				
						이미영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8-40, 108동 1702호 (다산동, 힐스테이트 황금산)				
						이병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50, 204동 1501호 (구미동, 무지개마을)				
						이상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동로2길 29, 2층 (일도이동)				
						이상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26동 1302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이상익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 신반포14차아파트 217-714				
						이상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4-904				
						이숙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56, 105동 2001호 (다산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이영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56, 105동 2001호 (다산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이정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01번길 17, 108동 202호(서현동, 호자촌)				
						이 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8, 409호(역삼동, 강남역두산위브스튜디오)				
						이현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01, 402동 801호(분당동, 셋별마을)				
						이희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파트 1-305				
						주식회사에 버시버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30, 502호(서초동, 서초상우빌딩)				
						주식회사코 윙윙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30, 102호(서초동, 서초상우빌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EA)	실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내곡동 신12-570	펜스	철재 H=2.5m	148m	수도용지	홍영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19-1 경남아파트 104-302					
		출입문 시설		1식		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EA)	실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세곡동 468-29	관상수	소나무 (H=1, 5m~10m)	27주	하천	국	건설부(국도교통부)					
		관상수	향나무 (H=5m, B=25m)	17주								
		관상수	철쭉나무 (H=1m)	50주								
		관상수	주목나무 (H=2m)	7주								
		관상수	단풍나무 (H=10m)	3주								
		관상수	은행나무 (H=10m)	2주								
		조경석	석재	1식								

인접 면적 면적	소재지 지번	말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EA)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말건의 내용	
		석탑	석재	3기								
		테크	석재									
		디딤석	석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56호

종합공사사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3.6.1. ~ 2023.6.15.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 근거
주대민종합건설 (대표 고동진)	건축공사업 01-4999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3층 308호	사업자 국세청 폐업 - 사업자등록번호: 695-88-02288 - 폐업일: 2023-02-28	등록말소 (2023.6.16.)	법 제83조 제12호
자산건설주 (대표 정철)	건축공사업 01-3549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4길 64-7, 지층	사업자 국세청 폐업 - 사업자등록번호: 226-81-25126 - 폐업일: 2022-12-31	등록말소 (2023.6.16.)	법 제83조 제1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58호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및 제64조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하자보증금을 반환대상자에게 반환 청구하도록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공고내용: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을 위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가. 계약건명: 2010년 성동·광진구 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나. 계약기간: 2010.4.14. ~ 2011.4.30.
 - 다. 계약자: 삼흥컨스트랙주식회사 (대표자 노성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19(대치동 953 - 21)
 - 라. 하자보증금액: 금6,475,399원(원금 5,828,430원, 이자 646,969원)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금 액(원)
5차 기성분	2010.12. 1. ~ 2012.11.30.	2,612,579 (원금 2,349,930, 이자 262,649)
6차 기성분	2010.12.15. ~ 2012.12.14.	1,503,396 (원금 1,351,500, 이자 151,896)
7차 기성분	2011.1.25. ~ 2013.1.24.	2,359,424 (원금 2,127,000, 이자 232,424)
합 계		6,475,399 (원금 5,828,430, 이자 646,969)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계약건명, 금액 등을 확인하여 하자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시에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동부수도사업소 지출담당 (☎ 02 - 3146 - 262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65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분 중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의거 독촉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건명: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3. 6. 1. ~ 2023. 6. 15.(15일간)
5. 공고내용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아울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등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충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최초부과 금액)	반 송 내 역		반송물 발송물 구 분
	성명	주소			반송 사유	반송일자	
1	조*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3길 65-9, 302호 (병화동, 통일빌라)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4-13	독촉고지서
2	마*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752, 102동 104호 (중화동, 중화한신아파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4-14	독촉고지서
3	김*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9길 19, 104동 802호 (역삼동, 역삼래미안아파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4-14	독촉고지서
4	신*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02-16, 101동 1104호 (돈암동, 범양아파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4-14	독촉고지서
5	박*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86-3 (용문동)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 부재	2023-05-10	독촉고지서
6	조*묵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181, 나동 302호 (장위동, 대봉맨션)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10	독촉고지서
7	김*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0길 17-23, 101호 (대조동)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 부재	2023-05-10	독촉고지서
8	박*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림드리2길 11-2, 202호 (풍납동, 목련연립)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10	독촉고지서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최초부과 금액)	반 송 내 역		반송물 발송물 구 분
	성명	주소			반송 사유	반송일자	
9	박*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왕로 56, 308동 503호 (천왕동, 천왕이페하하우스 3단지)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09	독촉고지서
10	배*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방로6길 8-35, 203호 (양재동, 선정하이호텔라)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09	독촉고지서
11	김*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300, 106동 901호 (휘경동, 동일스위트리버)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09	독촉고지서
12	최*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67길 24-5 (지암동)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09	독촉고지서
13	김*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민로 151, 204동 604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2단지)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10	독촉고지서
14	강*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27, 102동 805호 (성내동, 성내동삼성아파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 부재	2023-05-10	독촉고지서
15	홍*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3길 36-1, 2층 (청파동3가)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 부재	2023-05-10	독촉고지서
16	이*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426, 102동 1803호 (신길동, 신길센트럴아이파크)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10	독촉고지서
17	이*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백제고분로46길 37-5, 302호 (송파동)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10	독촉고지서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최초부과 금액)	반송 내역		반송물 발송물 구분
	성명	주소			반송 사유	반송일자	
18	이*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나길 13-2 (신길동)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10	등록고지서
19	유*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6길 26, 401호 (반포동, 케이) 에스홈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09	등록고지서
20	정*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52, 301호 (서초동, 삼흥위너스빌)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기타	2023-05-09	등록고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66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2023. 6. 1. ~ 2023. 6. 15.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 근거
쥘거명종합건설 (정명호, 박준규)	건축공사업 02-123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5, 7층 701호(자양동,금성빌딩)	○ 사업자등록 폐업 - 등록번호 : 424-81-00563 - 폐업일 : 2022-12-31	등록말소 (2023.6.30.)	법 제83조 제1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4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를 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4. 대상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6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부서
1	북한자유화 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6길 13 (방배동) 1021-14	강병규	2004-06-10	남북협력과
2	고향섬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101 (신월동) 235-7	엄명희	2010-02-22	남북협력과
3	하나희망연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2길 91 (공릉동) 3층	김윤재	2010-10-26	남북협력과
4	평화복지협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264 (월계동) 3층	조영남	2015-08-25	남북협력과
5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포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동, 진미파라곤) 601호	이오영	2018-01-10	남북협력과
6	(사)한민족예술문화 진흥협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59 (생천동) 4층	이학철	2018-02-05	남북협력과

5. 처분(말소) 일자 : 2023. 5. 26.

6. 공고 및 게시장소 : 서울시보 및 서울시청 누리집

7. 기타 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남북협력과(담당: 이강란, ☎ 02-2133-866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81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749호(2023.3.16.), 1213호(2023.4.27.)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단체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 당 사 자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한국인권재단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32, 4 층 (서교동, 서문빌딩)	고광현	2012. 2. 24.
2	지금여기에	서울시 마포구 방울대로 39 (망원동)2층	이명춘	2015. 11. 6.

- 처분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말소사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 근거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 열람·확인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인권담당관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3. 6. 16.(금) ~ 22.(목)까지

4.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인권담당관(☎02-2133-6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8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를 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4. 대상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부서
1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중구 청계천로160, 대림빌딩 571호(산림동)	최규봉	2011-03-24	민방위담당관
2	국가유공자 호국6.25 전상동지회	중구 남대문로 10길 28, 우석빌딩 1003호(수하동)	이희달	2004-10-27	민방위담당관
3	해병하마음자원봉사단	광진구 능동로 319, 2층(중곡동)	정태수	2001-05-31	민방위담당관
4	서울특별시 한국전쟁참전자회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 향군회관7층 (신천동)	천석길	2000-06-10	민방위담당관
5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 월드컵북로25, 강원도민회관 305호(서교동)	김영택	2009-11-18	민방위담당관
6	(사단법인)베트남참전전우회	마포구 포은로5, 3층(합정동)	김민수	2005-05-11	민방위담당관
7	세계평화유지군 국가유공자연합 서울전우회	은평구 증산서길82, 2층(증산동)	김유경	2011-04-18	민방위담당관
8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동작구 상도동 324-839	박부서	2005-03-25	민방위담당관
9	대한민국애국청년동지회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5층(여의도동)	오복섭	2005-01-31	민방위담당관
10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양천구 목동동로2길 57 (신정동)	안태훈	2011-01-27	민방위담당관

5. 처분(말소) 일자: 2023. 5. 26.

6. 공고 및 게시장소: 서울시보 및 서울시청 누리집

7. 기타 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담당: 전현아, ☎ 02 - 2133 - 450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597호

2023 「옥탑방 주거성능개선 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추가 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 지원대상 :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 주거성능 개선범위 : 구조·단열·채광·환기·화재 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
 - 구조안전 확인, 바닥, 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채광 및 환기 위한 창문 설치, 내·외장재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등

2. 지원금액 : 공사비 내역의 80% 지원(최대 2,000만원)

- ※ 인허가 수반으로 설계비 필요 시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최대 100만원 지원
 - ▶ 한국부동산원 2023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옥탑면적×건축설계 대가요율(9.51)×중간설계(35%)
 - (설계비 산출 예시) 1,812,402원/㎡(다가구) * 20㎡ * 9.51% * 35% = 1,206,516원
- ※ 공사 미완료 시 설계비 미지원(건축주 부담)
- 지원규모 : 총 100개소(자치구별 4개소 내외)
 - ※ 자치구별 지원 신청자가 4개소(기 접수된 건 포함) 이상일 경우 사용승인일 기준, 지원 필요성 등 적용하여 우선순위 정한 후 4개소까지 보조금심의 요청(나머지는 예비 대상자로 분류)
 - ※ 옥탑방의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

구 분	기 준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 가족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자, 다자녀 가족의 자녀 나이는 ‘만(滿) 나이’ 적용
- ’23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3. 지원조건

-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 보장 상생협약 체결(임대인, 임차인)
 - 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계약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착수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참여
- ※ (필수 확인)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유한 시공업체만 계약 가능
-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계획 수립
- 공사 컨설팅, 사전·준공 현장조사, 중간점검 시 적극 협조
-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23.10.31.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준공신청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단, 2023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이후 지급불가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 행위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 명단공표,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벌칙(징역·벌금) 부과
-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4.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샷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 현관문, 중문, 계단실 창,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화장실 제외)은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 (준공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옥탑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

-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구 분	최소 사용기준	권장 사용기준
창호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	열관류율 $0.56\text{W/m}^2 \cdot \text{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열관류율 $0.37\text{W/m}^2 \cdot \text{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내단열	열관류율 $1.13\text{W/m}^2 \cdot \text{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열관류율 $0.68\text{W/m}^2 \cdot \text{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지붕 단열	열관류율 $0.309\text{W/m}^2 \cdot \text{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열관류율 $0.2\text{W/m}^2 \cdot \text{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열관류율 $0.68\text{W/m}^2 \cdot \text{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외단열 공사 시 건축선 등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적용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추가 지원(친환경건물과 연계)

— ‘권장 사용기준’ 이상 자재 사용 시 해당 공종 공사비의 10% 이내(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금 지급

6.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 ‘ 23. 6. 1. ~ 6. 15.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아래 접수처 참조)

○ 신청절차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지원신청	◦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 신청서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동의서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주거 취약가구(임차인)인 경우 증빙 서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기초생활수급자</td><td>·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td></tr> <tr> <td>차상위계층</td><td>·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초본</td></tr> <tr> <td>중증 장애인</td><td>·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td></tr> <tr> <td>65세 이상 고령자</td><td>· 주민등록초본</td></tr> <tr> <td>다자녀 가족</td><td>·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td></tr> <tr> <td>한부모가족</td><td>·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초본</td></tr> <tr> <td>다문화가족</td><td>·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td></tr> </tbody> </table> ※ 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기타 구청장이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65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초본	다자녀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구 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65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초본																
다자녀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추가서류 제출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 [별지 제3호 서식] 공사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공사 전 사진 ◦ [별지 제5호 서식] 시공사 참여 동의서 ◦ 공사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 전문관의 공사 컨설팅 내용 반영하여 견적서 작성 ◦ (해당시) [별지 제7호 서식]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미등록 업체의 경우) ◦ (해당시) [별지 제6호 서식]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의 권장 사용기준 이상 자재 사용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제출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착수신고	◦ 표준 상생 협약서 ◦ 착수신고서, 표준 공사계약서 ◦ (해당시) 착공신고 필증(인허가 수반 시) ◦ (해당시)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의 경우 건설업등록증 사본																
완료신청	◦ 공사 완료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 정산 보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공사 전·중·후 세부사진 ◦ [별지 제10호 서식] 집수리 사업 만족도 조사 ◦ 최종 공사 견적서,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 (해당시)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해당시)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 (해당시)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집수리 업체 교육 수료증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 신청 접수처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건축과	02-2148-2792
중구	건축과	02-3396-5804
용산구	건축과	02-2199-7497
성동구	건축과	02-2286-5629
광진구	건축과	02-450-1689
동대문구	건축과	02-2127-5666
중랑구	건축과	02-2094-2302
성북구	건축과	02-2241-2907
강북구	건축과	02-901-6895
도봉구	건축과	02-2091-3663
노원구	건축과	02-2116-3903
은평구	건축과	02-351-7554
서대문구	건축과	02-330-1458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마포구	건축과	02-3153-9412
양천구	건축과	02-2620-3558
강서구	건축과	02-2600-6865
구로구	건축과	02-860-2999
금천구	건축과	02-2627-1633
영등포구	건축과	02-2670-3704
동작구	건축과	02-820-9836
관악구	건축과	02-879-6411
서초구	건축과	02-2155-6834
강남구	건축과	02-3423-6152
송파구	건축과	02-2147-3027
강동구	건축과	02-3425-6093

붙임 : 사업신청 제출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청

[규 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5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6조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보궐 시,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5조)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으로 구성함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제5조 제2항)은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제5조 제2항 제5호의 사람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안 됨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175호****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가. 2023. 7. 1.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 나.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불일치를 해소하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 다. 2023년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 2023. 7. 1.자 조직개편을 위한 일반직·특정직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
- 라. 그 밖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직·특정직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 : 서기관 (증)2명, 6급 (증)1명, 7급 (증)4명, 8급 (감)5명, (증)계 2명
 - 교육지원청
 - : 4·5급 (감)2명, 7급 (증)22명, 8급 (증)2명, 계 (증)22명
 - 각급학교
 - : 6급 (증)10명, 7급 (감)16명, 8급 (감)18명, 계 (감)24명
- 나. 일반직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 6급: 교육행정6급 (증)11명, 계 (증)11명
 - 7급: 교육행정7급 (증)12, 전기운영7급 (감)2명, 계 (증)10명
 - 8급: 교육행정8급 (감)18명, 운전8급 (감)2명, 전기운영8급 (감)1명, 계 (감)21명
- 다. 특정직공무원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장학관·교육연구관 (증) 2명, 장학사·교육연구사 (증) 1명
- 교육지원청: 장학관·교육연구관 (증) 1명, 장학사·교육연구사 (감) 4명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 (우 03178)

○ 이메일: bmw7289@sen.go.kr (※ 문의: 전화 02-399-9357)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6	1,799	1,320	4,597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25	6	1,510	1,012	4,597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2	31	11	-
		서기관	37	27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39	150	55	133
		교육행정	249	88	41	119
		행정	6	6	-	-
		사서	30	30	-	-
		보건	1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2	-	-
		공업 또는 시설	20	9	11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6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1	-	-
	6급	소계	1,898	491	284	1,118
		교육행정	1,221	211	160	845
		전산	48	26	22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 직		사서	131	-	120	11	-
		공업	11	-	9	-	2
		녹지	1	-	1	-	-
		보건	19	-	9	10	-
		식품위생	6	-	4	-	2
		간호	5	-	5	-	-
		시설	40	-	17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288	-	42	11	235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3	-	1	-	2
		열관리운영	10	-	8	-	2
		사무운영	55	-	20	12	23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685	-	573	449	1,663
		교육행정	1,616	-	243	306	1,067
		전산	57	-	46	11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1	-	1	-	-
		보건	30	-	16	14	-
		간호	5	-	5	-	-
		시설	48	-	20	28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 반 직		시설관리	524	-	19	15	490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7	-	2	-	5
		열관리운영	14	-	4	-	10
		사무운영	143	-	22	33	88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2,120	-	235	202	1,683
		교육행정	1,304	-	67	100	1,137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공업	14	-	2	12	-
		보건	19	-	4	15	-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588	-	44	6	538
		운전	12	-	1	5	6
		전기운영	3	-	1	-	2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4	-	4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 정 직	별정직 계		8	-	8	-	-
	4급상당(비서)		1	-	1	-	-
	5급상당(비서)		4	-	4	-	-
	6급상당(비서)		3	-	3	-	-
특 정 직	특정직 계		588	-	283	305	-
	장학관 · 교육 연구관	소계	123	-	67	56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2	-	38	34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465	-	216	249	-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6	1,797	1,298	4,621	총계		7,722	6	1,799	1,320	4,597
정 무 직	정무직 계	1	-	1	-	-	정 무 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교육감	1	-	1	-	-
일 반 직	일반직 계	7,125	6	1,508	990	4,621	일 반 직	일반직 계	7,125	6	1,510	1,012	4,597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0	-	29	11	-		4급 소계	42	-	31	11	-
	서기관	35	-	25	10	-		서기관	37	-	27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9	-	7	2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39	1	150	55	133		5급 소계	339	1	150	55	133
	교육행정	249	1	88	41	119		교육행정	249	1	88	41	119
	행정	6	-	6	-	-		행정	6	-	6	-	-
	사서	30	-	30	-	-		사서	30	-	30	-	-
	보건	1	-	1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1,887	5	490	284	1,108		6급 소계	1,898	5	491	284	1,118

현행							개정안						
구분							구분						
총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관리직	교육행정	1,210	5	210	160	835	일반관리직	교육행정	1,221	5	211	160	845
	전산	48	-	26	22	-		전산	48	-	26	22	-
	사서	131	-	120	11	-		사서	131	-	120	11	-
	공업	11	-	9	-	2		공업	11	-	9	-	2
	녹지	1	-	1	-	-		녹지	1	-	1	-	-
	보건	19	-	9	10	-		보건	19	-	9	10	-
	식품위생	6	-	4	-	2		식품위생	6	-	4	-	2
	간호	5	-	5	-	-		간호	5	-	5	-	-
	시설	40	-	17	23	-		시설	40	-	17	23	-
	방송통신	1	-	1	-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288	-	42	11	235		시설관리	288	-	42	11	235
	운전	5	-	2	-	3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3	-	1	-	2		전기운영	3	-	1	-	2
	열관리운영	10	-	8	-	2		열관리운영	10	-	8	-	2
	사무운영	55	-	20	12	23		사무운영	55	-	20	12	23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675	-	569	427	1,679	7급	소계	2,685	-	573	449	1,663
	교육행정	1,604	-	239	295	1,070		교육행정	1,616	-	243	306	1,067
	전산	57	-	46	11	-		전산	57	-	46	11	-
	사서	173	-	173	-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공업	20	-	8	12	-
	녹지	1	-	1	-	-		녹지	1	-	1	-	-

현행							개정안						
구분							구분						
	총계	사회복지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사회복지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보건	30	-	16	14	-	보건	30	-	16	14	-	
		5	-	5	-	-		5	-	5	-	-	
		48	-	20	28	-		48	-	20	28	-	
		524	-	19	4	501		524	-	19	15	490	
		12	-	3	6	3		12	-	3	6	3	
		1	-	1	-	-		1	-	1	-	-	
		9	-	2	-	7		7	-	2	-	5	
		14	-	4	-	10		14	-	4	-	10	
		143	-	22	33	88		143	-	22	33	88	
		1	-	1	-	-		1	-	1	-	-	
		1	-	1	-	-		1	-	1	-	-	
		18	-	3	15	-		18	-	3	15	-	
		2	-	2	-	-		2	-	2	-	-	
		4	-	2	2	-		4	-	2	2	-	
		8	-	1	7	-		8	-	1	7	-	
	8급	2,141	-	240	200	1,701	8급	2,120	-	235	202	1,683	
		1,322	-	70	98	1,154		1,304	-	67	100	1,137	
		24	-	13	11	-		24	-	13	11	-	
		85	-	85	-	-		85	-	85	-	-	
		14	-	2	12	-		14	-	2	12	-	
		19	-	4	15	-		19	-	4	15	-	
		50	-	8	42	-		50	-	8	42	-	
		588	-	44	6	538		588	-	44	6	538	
		14	-	3	5	6		12	-	1	5	6	
		4	-	1	-	3		3	-	1	-	2	
		-	-	-	-	-		-	-	-	-	-	
		4	-	4	-	-		4	-	4	-	-	
		5	-	5	-	-		5	-	5	-	-	
		11	-	-	11	-		11	-	-	11	-	

현행							개정안						
구분							구분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 직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	-	-	-	-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	-	-	-	-			-	-	-	-	-
	9급	소계	-	-	-	-	9급		-	-	-	-	-
		시설관리	-	-	-	-			-	-	-	-	-
		운전	-	-	-	-			-	-	-	-	-
		전기운영	-	-	-	-			-	-	-	-	-
		열관리운영	-	-	-	-			-	-	-	-	-
		사무운영	-	-	-	-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	-	-	-
		-	-	-	-	-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전문 경력관		7	-	7	-	-
		가군	1	-	1	-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1	-	1	-	-
		나군	2	-	2	-			2	-	2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1	-	1	-	-
		평생교육사	-	-	-	-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1	-	1	-	-
		다군	4	-	4	-			4	-	4	-	-
		숙기사	-	-	-	-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연구사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13	-	2	11	-
별 정 직	별정직 계		8	-	8	-	별 정 직	별정직 계		8	-	8	-
	4급상당(비서)		1	-	1	-		4급상당(비서)		1	-	1	-
	5급상당(비서)		4	-	4	-		5급상당(비서)		4	-	4	-
	6급상당(비서)		3	-	3	-		6급상당(비서)		3	-	3	-
특 정 직	특정직 계		588	-	280	308	특 정 직	특정직 계		588	-	283	305
	장학관·교육 연구관		120	-	65	55		장학관·교육 연구관		123	-	67	55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3급 상당		17	-	6	11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69	-	36	33	-			5급 상당		72	-	38	34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468	-	215	253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465	-	216	249	-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1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 조례 내 탈북학생 연령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취학연령(만6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지원 대상의 상한연령(만25세미만)을 고려하여 만 나이 방식으로 규정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시행 ' 23.6.28.)에 따른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제7조의 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조례 정비

2. 주요 내용

가. 제2조(정의) (안 본문)

- 탈북학생 연령 규정(만 나이 방식)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시행 ' 23.6.28.)에 따라 조례 내 나이 표기에서 “만” 표시 삭제
- 만6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 6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전화 02 - 399 - 9469, FAX 02 - 6973 - 9938

○ 이메일: sosweet11@sen.go.kr

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일부개정안: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6세 이상 만25세”을 “6세 이상 25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u>만6세 이상 만25세</u>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1. - <u>6세 이상 25세</u> - - - -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붙임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3 년 월 일

구 고 시

◆ 중랑구고시 제2023-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01 - 88호(2001.11.24.)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20 - 40호(2020.05.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21 - 55호(2021.04.0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23 - 27호(2023.03.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상봉동 67 - 11 ~ 61 - 4간 도로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1일

중 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67 - 11 ~ 61 - 4간(변동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동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상봉동 67 - 11 ~ 61 - 4간 도로사업
- 3) 사업의 규모(변동없음) : 면적 1,377㎡ (7필지)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변동없음)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동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6.12.31.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동): 별도 첨부<붙임2>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로과(☎2094 - 2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망우동 상봉동 67-11 ~ 61-4간 도로사업

구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폐입 면적 (㎡)	성명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주 소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 변경	1	상봉동	56-9	잡	318	317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56-9	잡	317	317	중랑구	1						
기정	2	상봉동	67-8	전	139	139	중랑구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정	3	상봉동	61-4	잡	309	309	중랑구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정 변경	4	상봉동	56-13	잡	40	36	김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5-1601					
		상봉동	56-17	잡	36	36	김현재	1						

구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지분	주 소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	5	상봉동	56-11	잡	473	62	김신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4, 청구아파트 6-1511					
							홍영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495 동부아파트 101-1907					
							김종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495 동부아파트 101-1907					
							임종덕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87, 104-804(개봉동,개봉원진아파트)					
변경		상봉동	56-16	잡	62	62	김신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4, 청구아파트 6-1511					
							홍영기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495 동부아파트 101-1907					
							김종희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495 동부아파트 101-1907					
							임종덕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87, 104-804(개봉동,개봉원진아파트)		김미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59, 152-1301(상현동 상현마을금회 베스트빌 1단지 아파트)		

구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 변경	6	상봉동	67-11	전	150	58	김현재		경기도 고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5-1601				
		상봉동	67-12	전	58	58	김현재	1	경기도 고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5-1601				
기정	7	상봉동	56-14	잡	456	456	김경안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155-1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중랑구고시 제2023-5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79호(2019. 9. 5.)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771호(2023. 5. 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랑구 중화동 29-2, 85-1, 85-2, 85-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및 기반(일반)시설 사업
- 2) 명 칭 :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면적 2,023㎡, 주차시설 230면

- 1) 도시계획 시설 : 면적 1,899㎡(중화동 29-2, 85-1, 85-2)
- 2) 기반(일반)시설 : 면적 124㎡(중화동 85-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차관리과(☎02-2094-2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및 물건 조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필면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중화동	29-2	주차장	1,575	1,575	중랑구청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1	중화동	85-1	대	103	103	중랑구청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2	중화동	85-2	전	221	221	중랑구청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3	중화동	85-3	대	124	124	중랑구청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	-----------------



내 용	현황사진
-----	------



◆ 은평구고시 제2023-6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73호(1978.05.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호(2009.01.29.)로 건축범위 등 일괄결정된 역촌초등학교(역촌동 82-1번지)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05.15.) 결과, 원안가결되어 이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은 평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에 따라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범위(건폐율, 용적률)를 변경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82-1	13,228.1	-	13,228.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73호 (1978.5.20.)	

-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0 이하	45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학교	- 건폐율 · 기정 : 30% 이하 · 변경 : 45% 이하 - 용적률 · 기정 : 120% 이하 · 변경 : 130% 이하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 - 740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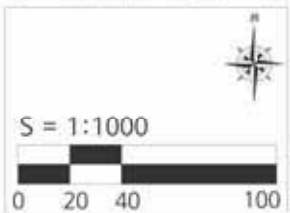
■ 붙임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 은평구 역촌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 행정구역 읍면동 경계
- 학교 학 교
- 기타 도시계획시설



◆ 은평구고시 제2023-63호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23 - 28호(2023. 3. 9.)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23 - 538호(2023. 3. 23.)로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주민참여협치과(☎351 - 630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사업 (공공청사) -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역촌동 62-26 외 3필지	• 부지 1,928.3㎡, • 건물 6,099.60㎡ - 지상 : 4,810.00㎡ - 지하1(공영주차장) : 1,289.60㎡	인가일로부터 2년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명 :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계	필지		1,928.3	1,928.3						
1	은평구 역촌동 62-26	대	1,263.8	1,263.8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북변동)				
2	은평구 역촌동 62-27	대	393.1	393.1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북변동)				
3	은평구 역촌동 62-23	대	150.7	150.7	김*일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63-1, 2층(역촌동)	** 새마을금고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6	근저당	
4	은평구 역촌동 62-24	대	120.7	120.7	원*순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63-2, 301호(역촌동)				

건 물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명 :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 소	권리의 종류	
계		3동		2,051.18								
1	은평구 역촌동 62-23	건물	철근 콘크리트	245.38	다가구 주택	김*일	서울시 은평구 영서로 63-1, 2층(역촌동)	** 새마을금고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6		근저당	
2	은평구 역촌동 62-24	건물	철근 콘크리트	199.2	다가구 주택	원*순	서울시 은평구 영서로 63-1, 2층(역촌동)					
3	은평구 역촌동 62-26	건물	철근 콘크리트	1,606.6	업무 시설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남부동)					

◆ 강서구고시 제2023-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실효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강 서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류	9	4~6	796	염창동 62-4	염창동 111-4	일반	1974.06.22. (서고제81호)	전체실효
변경	소로	3류	13	4~6	220	염창동 182-3	염창동 112-2	일반	1974.06.22. (서고제81호)	전체실효

나. 실효일자 : 2020.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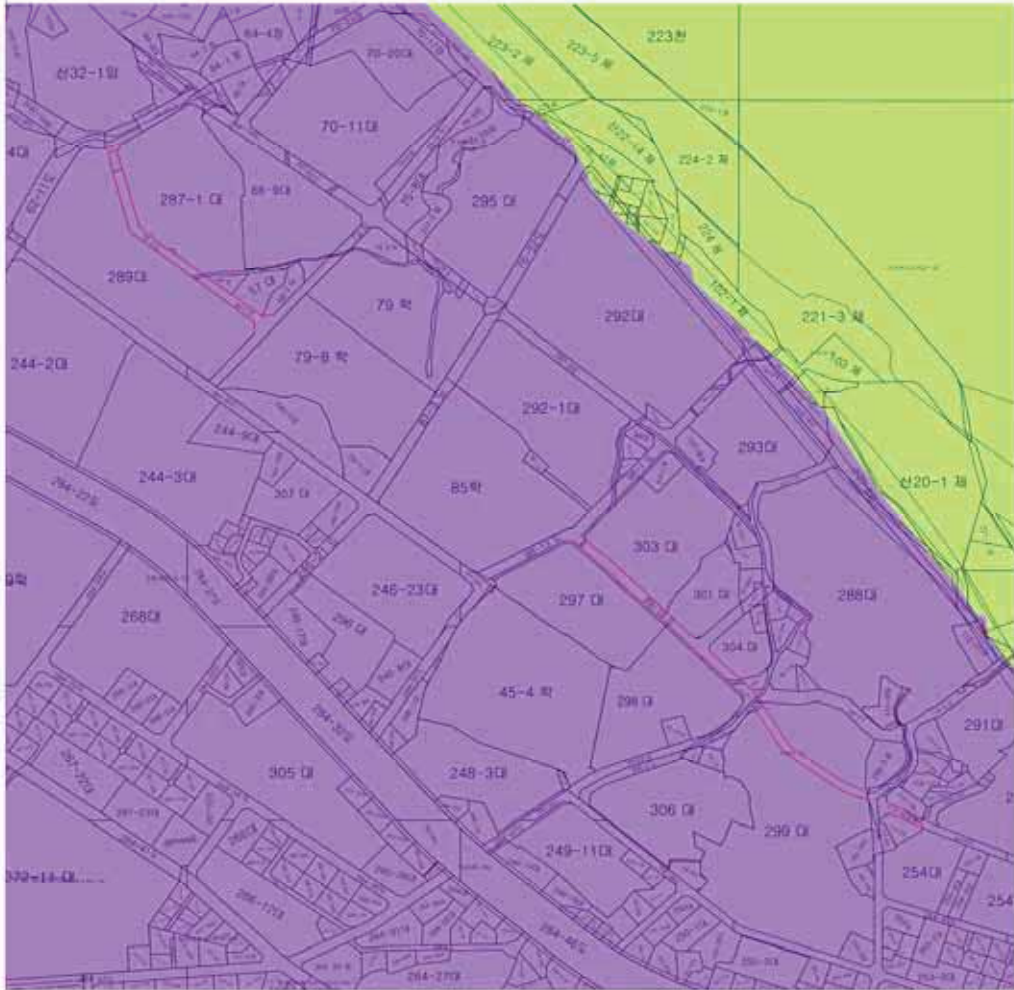
다.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라. 지형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 - 6678), 도로과(☎2600 - 6935)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
○ 염창동 62-4 ~ 111-4(기정)



강서구 염창동 62-4 ~ 111-4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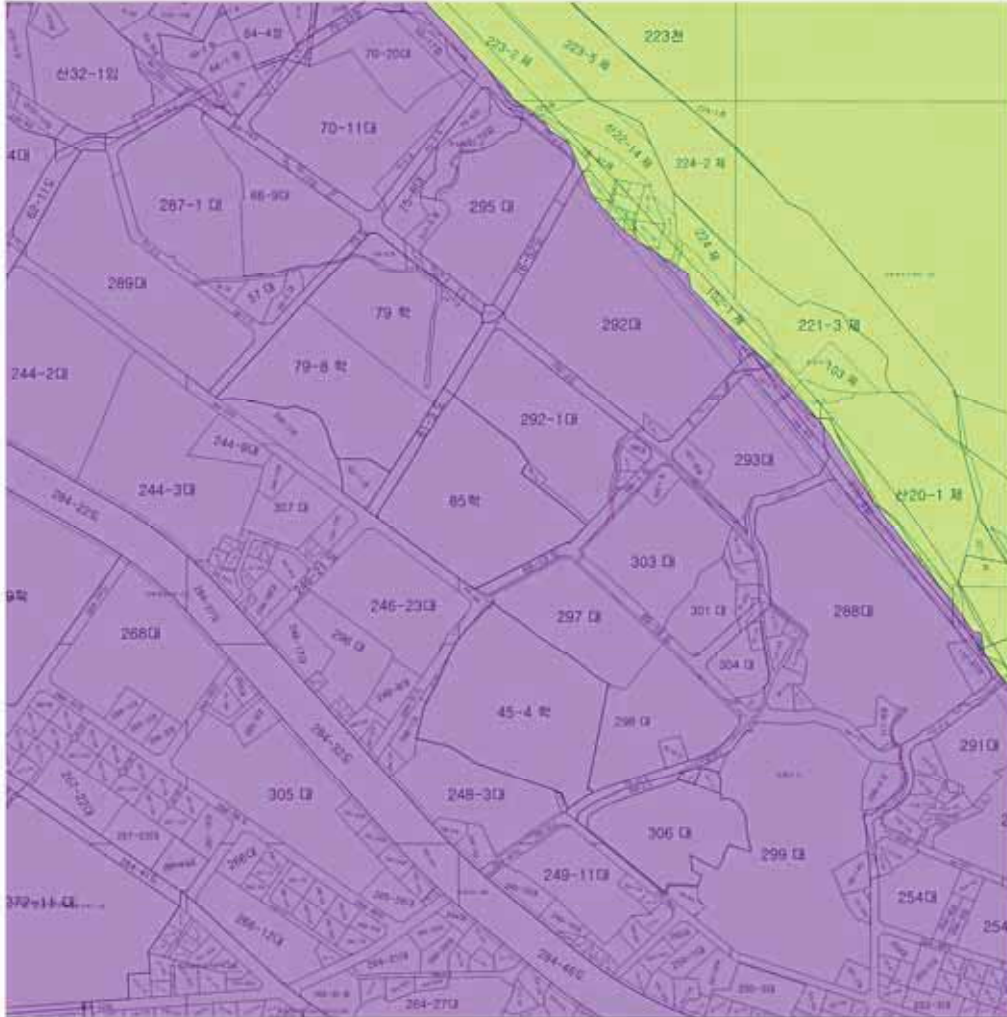
■ 범례 (LEGEND)

○ 도시계획도로

Scale = 1:1,000



○ 염창동 62-4 ~ 111-4(변경, 전체실효)



강서구 염창동 62-4 ~ 111-4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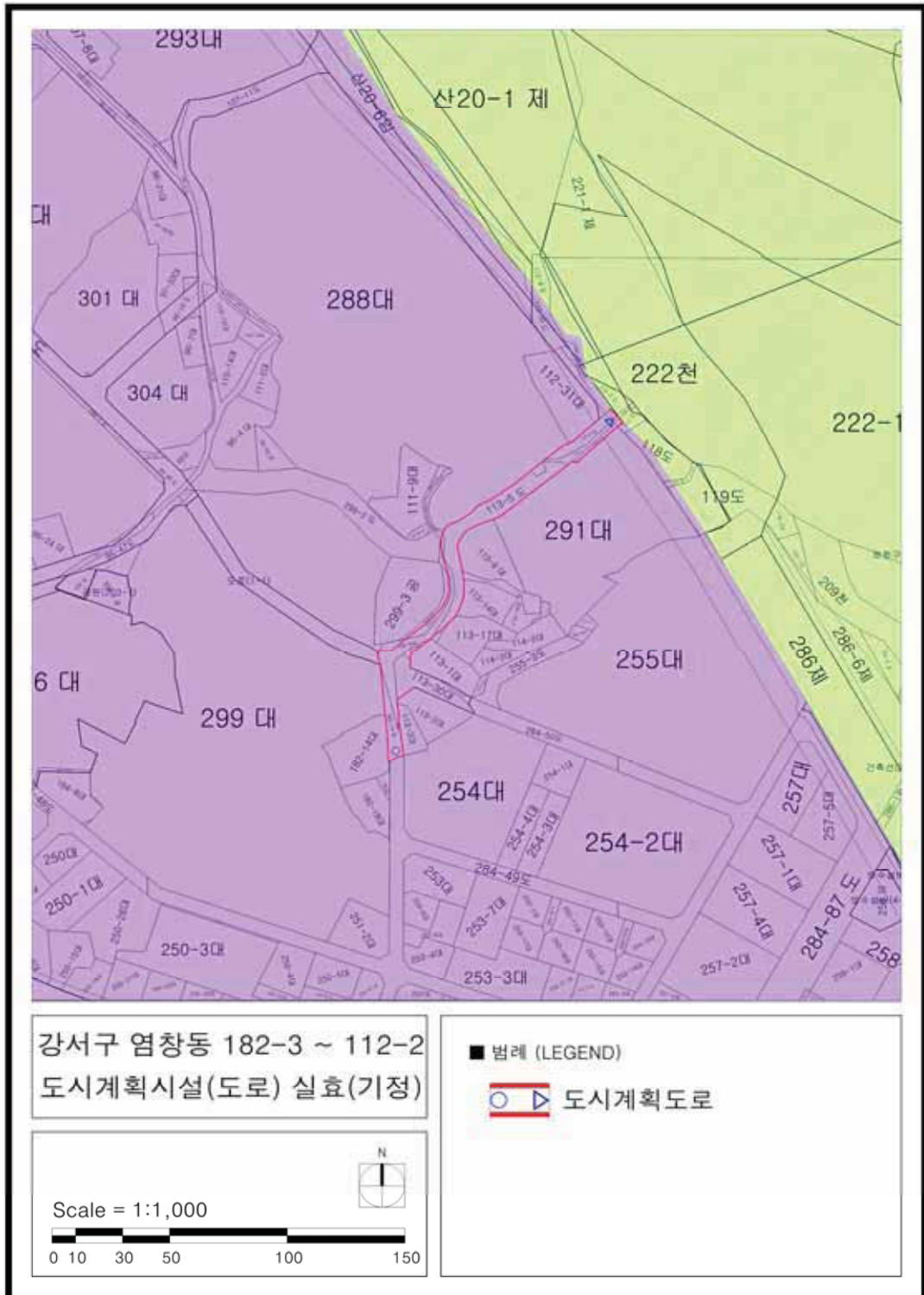
■ 범례 (LEGEND)

○ ▷ 도시계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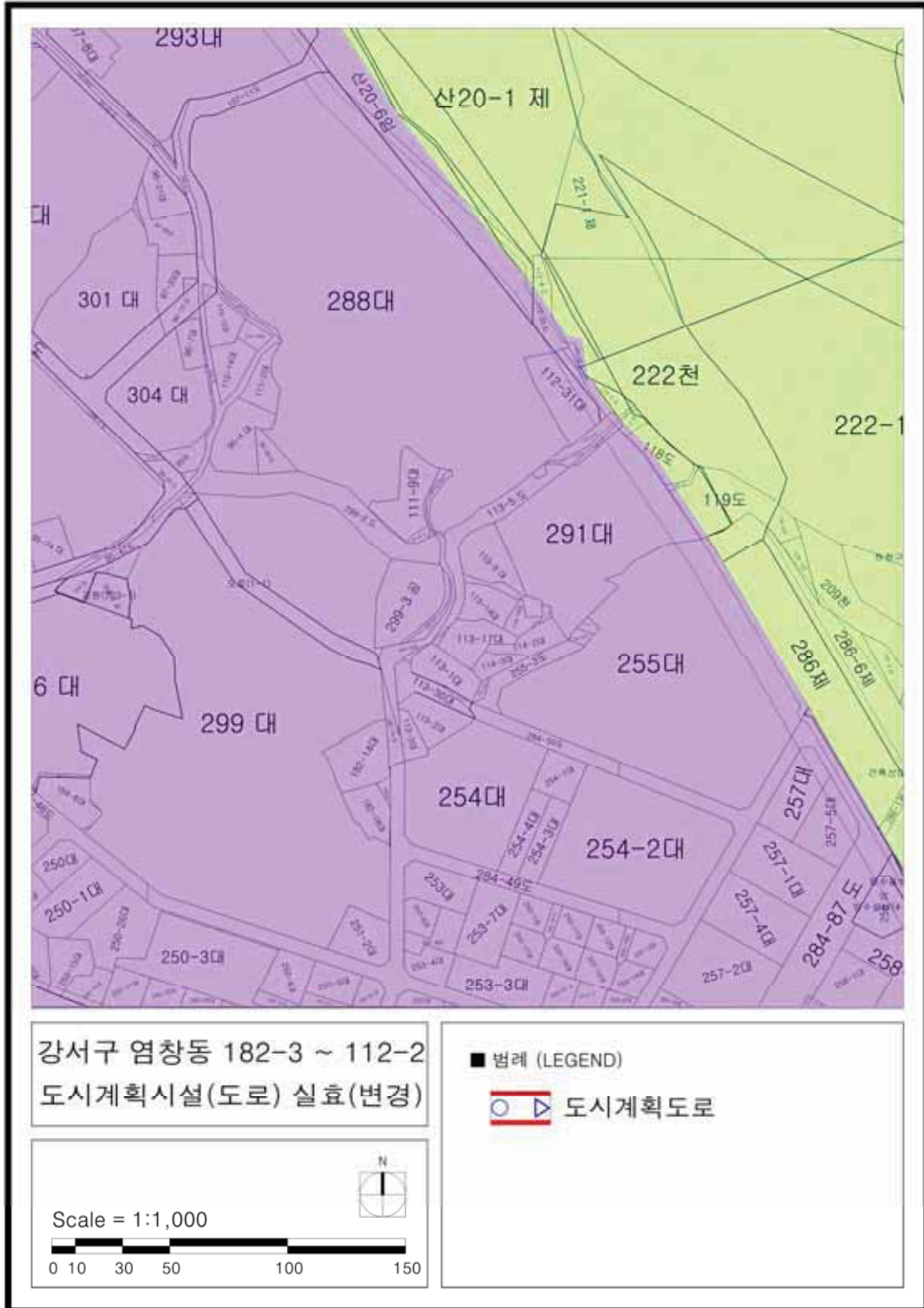
Scale = 1:1,000



○ 염창동 182-3 ~ 112-2(기정)



○ 염창동 182-3 ~ 112-2(변경, 전체실효)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3-754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 - 125호(2019.04.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254호 (2020.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 - 93호(2020.06.29.)」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1 - 130호(2021.08.05.)」로 최종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1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33 - 12 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면적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북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조성
- 4) 사업면적: 5필지 2,687㎡

다.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라.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당 초: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2020.6.29.~2023.6.28.)
- 2) 변 경: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2020.6.29.~2025.6.28.)

바.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참조

아. 공고방법: 종로구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종로구청 도시녹지과(☎02-2148-2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필지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	계			2,976							
1	홍지동 33-12	대	659			서울특별시 종구 세종대로 110					
2	홍지동 35-9	대	6			서울특별시 종구 세종대로 110					
3	홍지동 36-15	대	1,485		한상만 단독	종로구 세검정로 209-21					
4	홍지동 36-19	대	337	109	장사익	1/2	종로구 세검정로 209-19				
					고완선	1/2	종로구 세검정로 209-19	주식회사 국민은행	종구 남대문로 84 (논현사거리지점)	근저당권	
5	홍지동 36-21	대		428	박기옥 단독	종로구 세검정로 209-17	남병희	종로구 홍지동 36-21	근저당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종구 태평로2가 120 (효자동지점)	근저당권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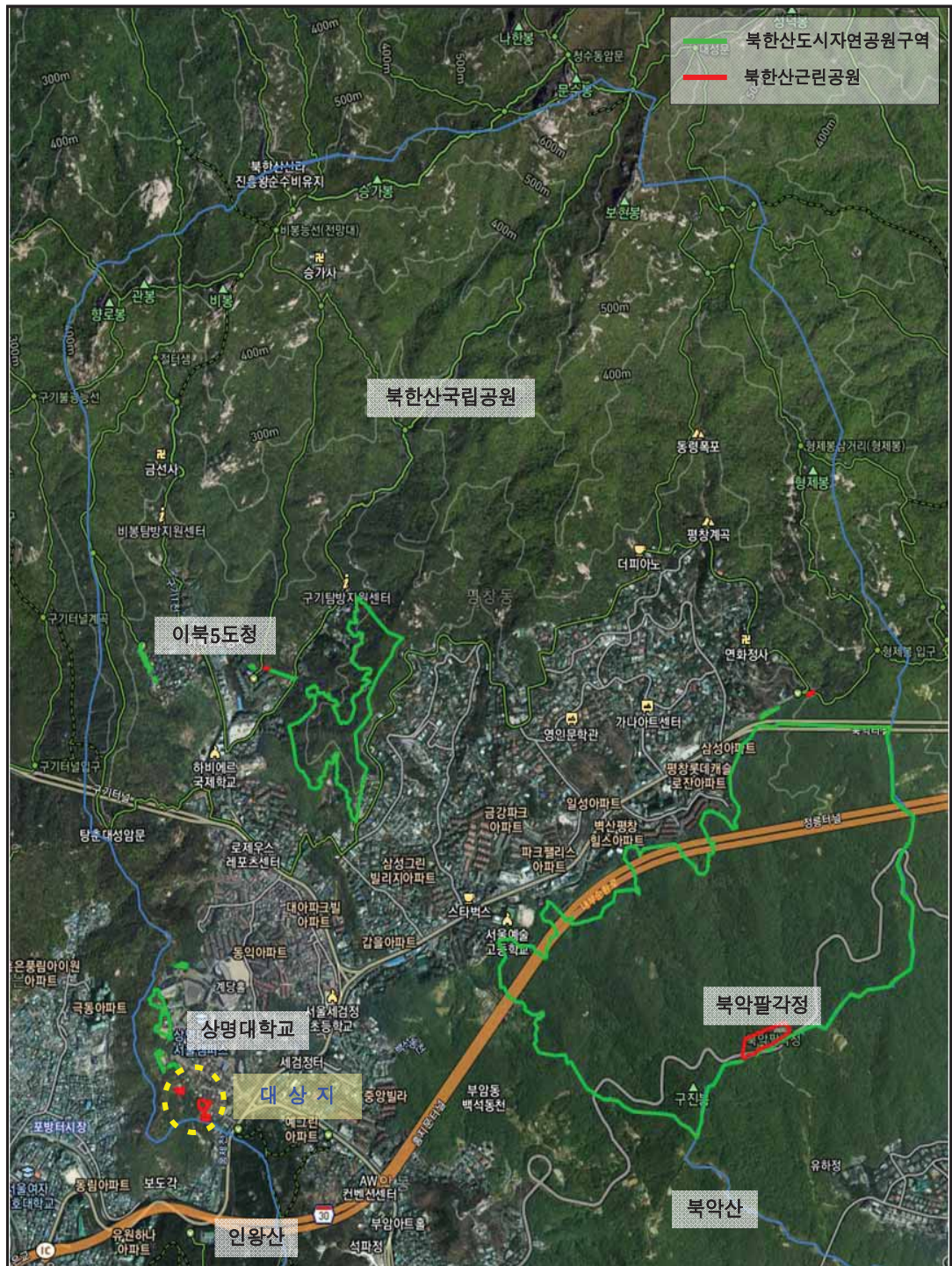
-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홍지동 33-12	무허가		벽돌조	110	1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판넬	16	16																			
			판넬	2	2																			
	화단		2*2.5	1식																				
			5*3	1식																				
	수목		감나무	H7.0*R35	1주																			
			감나무	H5.0*R30	2주																			
			감나무	H2.0*R8	1주																			
			앵두나무	H1.0*R5	1주																			
			오기피	H1.5*R8	1주																			
			대추나무	H2.0*R7	1주																			
			대추나무	H3.0*R20	1주																			
			살구나무	H6.0*R35	1주																			
			살구나무	H2.0*R10	1주																			
			뽕나무	H5.0*R8	1주																			
			은행나무	H2.0*R4	2주																			
			자두나무	H3.0*R15	1주																			
			황매화	H1.0*W0.6	12㎡																			
			목단	H1.5*W1.0	1주																			
			명자나무	H1.5*W0.6	1주																			
			수수꽃다리	H1.0*R30	1주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	홍지동 36-15	일반 건축물	수수꽃다리	H1.5*R19	1주							
			수수꽃다리	H1.0*W0.6	3㎡							
			수목	H0.6*W0.6	1주							
			시월나무	H1.0*R5	3주							
			시월나무	H1.0*R14	2주							
			시월나무	H1.0*W0.6	5㎡							
			개나리	H1.0*W0.6	3㎡							
3	홍지동 36-19	일반 건축물	지하	65.36	65.36							
			철근 콘크리트구조	1층	106.2	한갑수	단독	종로구 세검정로 209-21				
				2층	131.04							
				3층	123.98							
			철근 콘크리트구조	98.1	41.79	장사익	1/2	종로구 세검정로 209-19				
4	홍지동 36-21	무허가	-	37	16	고원선	1/2	종로구 세검정로 209-19	주식회사 국민은행	종구 남대문로 84 (노원사거리자점)	근저당권	
						박기욱	단독	종로구 세검정로 209-17				

위 치 도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계 획 도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동대문구공고 제2023-685호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동대문구 공고 제2022 - 414호(2022.04.07.)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03.29.)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동 대 문 구 청 장

I.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II.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02 - 2127 - 4947)

III.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①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370,774.3	감) 12,450	358,324.3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존치관리구역 제척

IV.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	증) 331,246	331,246	-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31,246	-	331,246	100.0	
소 계		288,830	-	288,830	87.2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4,848	-	54,848	16.6	
	제2종일반주거지역	14,238	-	14,238	4.3	
	제3종일반주거지역	219,744	-	219,744	66.3	
	일반상업지역	42,416	-	42,416	12.8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지구	청량리동 176일대	26,995	건고시 783호 (64.02.12.)	

2.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29~35 (30)	보조 간선	1,400 (629)	신설동 제1호광장	제기동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왕산로
기정	대로	3	9	25~30 (25)	보조 간선	1,600 (757)	제기동	청량리동	일반 도로	건고시177 (62.12.8)	제기로
기정	대로	3	11	26~35 (-)	보조 간선	1,900 (14)	답십리동 493-14	전농동	일반 도로	총고시772 (36.12.26)	전농로
기정	중로	1	145	20	국지 도로	1,120 (362)	중로2-53 제기동 857	청량리 대2-2	일반 도로	건고시436 (72.10.12.)	
기정	중로	1	223	20~28 (25)	집산 도로	1,200 (672)	청량리동 272	청량리동 205-719	일반 도로	-	홍릉로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56	청량리동 447-20	청량리동 442-17	일반 도로	서고시95-98 (10.11.25)	
변경	중로	3	1	12	국지 도로	56	청량리동 447-20	청량리동 442-17	일반 도로	서고시95-98 (10.11.25)	도로선형 정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400	청량리동 341	청량리동 214	일반 도로	서고시78-235 (78.05.25)	
변경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400	청량리동 341	청량리동 214	일반 도로	서고시78-235 (78.05.25)	도로선형 정정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8~10	국지 도로	235	청량리동 57-2	청량리동 836	일반 도로	서고시504 (89.11.24)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8	청량리동 215-33	청량리동 213	일반 도로	서고시95-98 (95.04.11)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18	청량리동 215-33	청량리동 213	일반 도로	서고시95-98 (95.04.11)	도로선형 정정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52	청량리동 442-4	청량리동 442-17	일반 도로	서고시3012 (10.11.25)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39	주차장	청량리동 51-4,5	688.5	-	688.5	동대문구고시 1998-65호 (1998.08.20.)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원	소공원	청량리동 445-35번지 일대	2,099.92	-	2,099.92	서고시 2010-420호 (2010.11.25)	청량리 8구역

2)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청량리동 57-19번지	396.4	-	396.4	구고시 1999-10호 (1999.04.10.)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청사	청량리동 57-6일대	791.0	-	791.0	동대문구 고시 2007-87호 (2007.09.13.)	청량리1동 주민센터
기정	-	공공청사	청량리동 235-5	2,982.2	-	2,982.2	서고시 1979-35호 (1979.01.29.)	동대문 세무서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하수도	전농동 597-70,69	B=4m, L=25m	서고시 1988-1003호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가. 가구에 관한 계획

■ 가구 결정조서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1	3,492.6	7	2,195.6	13	7,525.7
2	11,044.7	8	5,433.6	14	7,063.3
3	7,176.0	9	56,715.9	15	12,524.1
4	4,317.7	10	53,264.2	16	33,083.0
5	3,605.1	11	8,787.3	17	16,071.4
6	2,800.2	12	1,346.0	18	11,472.97
19	489.9				

나. 획지에 관한 계획

1) 최대개발규모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주거지역	1,000㎡ 미만	평균 필지규모(약 350㎡)의 약 3배이하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① 기존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② 기개발된 일단의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③ 공동개발(권장·지정)에 의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2) 획지 결정조서

■ 공동개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지정)	도면 표기	• 열람공고일 당시 동일 소유자 및 기 공동개발 된 필지인 경우(건축물 대장 기준)	
공동개발(권장)		• 적정개발규모 유도 및 대지형태 정형화	
자율적 공동개발	도면 표기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대지와 연결한 대지의 토지 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이 불가하나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 공동개발되는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거나,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 불허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생략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1) 불허용도

■ 불허용도 결정조서

도면 표시	불허용도	비고
공통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불허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도면 표시	불허용도	비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불허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권장용도 결정조서

도면 표시	내 용	비 고
권장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단, 「벤처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료, 바이오 관련 업종 권장)에 한함)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폐율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름

※ 특별계획(기능)구역은 특별계획(기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건폐율 완화 결정조서

구 분	완화 내용	비 고
왕산로 남측 (정비필요지역)	10% 완화 (60% 이하 → 70% 이하)	

■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름

※ 특별계획(기능)구역은 특별계획(기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상한용적률 적용기준

① 공공시설 등 제공시 인센티브

$$\text{상한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 토지} + 1.0 \times \alpha \text{ 건축물} + 1.0 \times \alpha \text{ 현금})$$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 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 포함
- α 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 현금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begin{aligned} &= \text{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times \frac{\text{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text{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 &\bullet \text{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frac{\text{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bullet \text{ 현금 환산부지 면적(㎡)} = \frac{\text{현금 기부채납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end{aligned}$$

② 친환경 항목 적용시 인센티브

$$\text{상한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0.7 \times (\sum \text{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B)}))$$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의 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단,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사전협상제도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방안(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은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 완화범위 :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배 이내
-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초과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수요조사 의무시행
- ZEB 인증과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관련 인센티브는 중복 적용 불가
- 건축물에 대한 준공·사용승인·사용허가 신청시 관련 인증등급 등 증빙서류 제출
- ※ 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기준은 해당 변동 내용을 따름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B)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 ① ~ 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15% 적용 ($0.7 \times (\sum ① \sim ③) \geq 15\%$ -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

① ZEB 인증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에너지효율인증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완화비율	15%	14%	13%	12%	11%		1+등급	9%	6%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1 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④ 장수명주택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이상	20%이상	25%이상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5%	10%	15%		완화비율		15%	10%

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조서

적용대상		최고높이	비 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5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70m 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0m 이하	
왕산로 남측	정비필요지역	40m 이하	
	일반관리지역	70m 이하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쳐는 대지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름

라. 건축물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선에 관한 결정

■ 건축선계획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왕산로, 홍릉로, 제기로	• 3m 이상	
	홍릉로(청량리동 359번지)	• 4m 이상	
	이면도로	• 1~5m 이상	
벽면한계선	약령시로(이면부)	• 2m 이상 (최소 높이 10m 이상)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2) 건축물의 형태·외관 등에 관한 결정

■ 건축물 형태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전체	분절 및 분할	• 건축물의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재료구분, 창호디자인, 상하부 구분 등의 입면의 분절요소를 활용하여 풍부한 입면 디자인 권장	
1층부	1층 바닥 높이	•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 이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 • 가로에 접하는 건물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및 공지로부터 15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으나,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예외 인정	
	투시형 벽면/셔터	• 1층 벽면적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 보이는 컬러유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 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개구부 높이	•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과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롭게 조성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금지	

■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재료	통일성	• 외벽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반사성 재료 금지	•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조화로운 재료	- 건물 저층부의 경우 보행자의 시선을 배려하여 시각적인 깊이와 입체감이 있는 소재(벽돌, 루버, 송판, 노출콘크리트, 스테코 등 질감 및 패턴이 있는 소재)사용 권장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 권장	
색채	조화로운 색채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계열 사용을 지양 - 재료의 고유 특성이 살아있는 자연색 또는 지역색 적용	

■ 가로경관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차양 설치	수평분할요소 적용시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인존(Sign Zone),출입문 및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설치하는 윈도우존(Window Zone), 어닝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차양존(Awning Zone)으로 1층부 수평분할요소를 적용 - 보행자의 이동 및 이용편의를 위한 가변형공간 및 캐노피(어닝 포함)등의 설치를 권장	
담장 및 응벽	식재형/투시형 담장	담장을 설치 할 경우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 디자인	-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 - 단일 건물에 여러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통일감 있게 설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기준을 준수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전면공지	간선부 (왕산로, 홍릉로, 제기로)	-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보도확장형 전면공지(3~4m) 조성	
	이면부	-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보도확장형 전면공지(1~5m) 조성	
	이면부(약령시로)	- 벽면한계선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보도확장형 전면공지(2m) 조성	
공공보행통로	전농동 597-70번지 일대	최소 폭원 4m 이상으로 포장패턴 등을 차별화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인식성을 높이고, 24시간 공공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	
	청량리동 308번지, 청량리동 317번지 일대	최소 폭원 4m 이상으로 포장패턴 등을 차별화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인식성을 높이고, 24시간 공공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필로티구조 포함)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 (왕산로, 홍릉로, 제기로)	간선도로에서 대지안으로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단, 이면도로로의 진출입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간선도로에서 차량의 출입을 허용)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왕산로 남측	공동개발이 어려워 개별필지로 개발할 경우 공동주차출입구 지정을 위한 차량출입구간으로 변경 가능(경미한 변경사항)	
(공동) 주차출입구	간선도로변 (왕산로, 홍릉로, 제기로)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필지에 지정	
	왕산로 남측	공동개발을 하지 못할 경우,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진·출입을 위해 공동주차출입구 설치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 내용을 따름

4. 인센티브 운용 계획

■ 인센티브 A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중점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면적 및 필지수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alpha = 0.1 \sim 0.3$ (2필지 : $\alpha = 0.1$, 3필지 : $\alpha = 0.2$ 4필지이상 : $\alpha = 0.3$)
계획 유도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 면적 $\div$ 연면적) $\times 0.5$	연면적 20%이상 확보시 적용(주차장 제외)

■ 인센티브 B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 ÷ 연면적) × 0.7	연면적 20%이상 확보시 적용(주차장 제외)
계획 유도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설치 (간선도로 의무사항 인센티브 제외) 건축한계선 α=0.1 벽면한계선 α=0.4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기준용적률 × 0.02	1층 전면부 투시형처리 70%이상 계획 및 수평 분절시
	친환경	물환경	빗물이용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 (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04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30%까지 허용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대기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 기준용적률 × 0.05	[주거:300세대 이상]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시 [비주거:연면적 1만㎡ 이상]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미세먼지 저감장치	• 기준용적률 × 0.05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지역기여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 미세먼지 저감장치 예시 ; 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생활 환경	유니버설 디자인(BF인증)	• 기준용적률 × 0.1	의무대상 : 일반등급 초과시 비의무대상 : 일반등급 취득시

※ 친환경 부문의 '주거', '비주거' 범위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름

■ 인센티브 C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중점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 기준용적률 × 0.35	2필지 이상 공동개발시
계획 유도	대지 내 공지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설치 (간선도로 의무사항 인센티브 제외) 건축한계선 α=0.1 벽면한계선 α=0.4

④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안)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①	왕산로 전면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3,492.6	
신설	②	미주상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235-4번지 일대	11,044.7	
신설	③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46번지 일대	6,766.7	
신설	④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368번지	3,748.7	
신설	⑤	청량리8구역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28,996.59	
신설	⑥	왕산로 남측 특별계획구역	전농동 591-2번지 일대	836.57	
신설	⑦	미주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235-1번지 일대	56,785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①	왕산로 특별계획가능구역	청량리동 50-14번지 일대	4,317.7	

2.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생략

나. 특별계획가능구역(해제 시) 계획지침 : 생략

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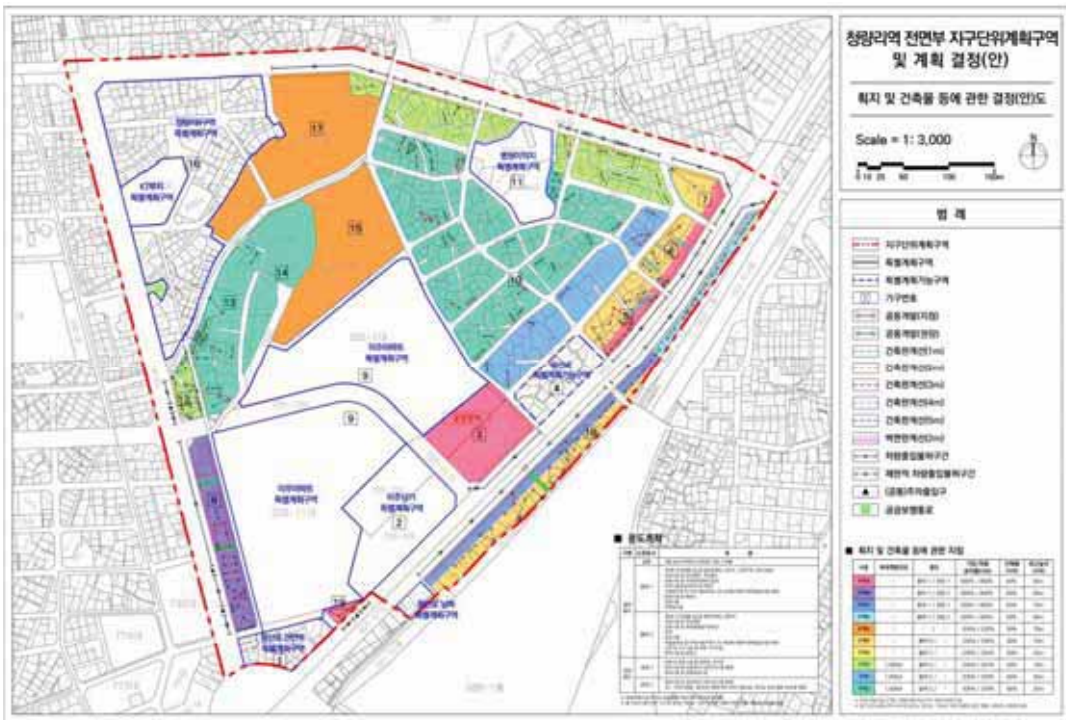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 안의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위치 및 조성방법(신설·폐지 포함)의 변경
3. 공동주차출입구 설치를 위한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4.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V.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



◆ 동작구공고 제2023-933호

상도동 356-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356 - 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거나,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의견청취 - 동작구 - 공고문)에 주민의견서를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동 작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23. 6. 2. ~ 2023. 6.15.(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기관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장승배기로161, 별관4층)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	증) 22,925.0	22,925.0	-

※ 구역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나. 관계도서 : 상도동356 - 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4. 의견서 제출 방법 : Fax 02 - 820 - 9798, e - mail jiwon9747@dongjak.go.kr
- 서면 및 온라인(팩스 · 이메일)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주민의견서 제출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 - 820 - 9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3-12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240호(2022.12.29.)로 변경 결정된 서초구 신원동 24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구간의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서 초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J	4.0 ~ 6.3	국지도로	28	소로 3-3	중로 3-B	일반도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141호 (2017.10.26.)	
변경	소로	3	J	4.9 ~ 6.3	국지도로	28	소로 3-3	중로 3-B	일반도로		

-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 3-J호선	소로 3-J호선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4.0 ~ 6.3m → 4.9 ~ 6.3m	○ 도로의 가각전제 및 폭원 변경

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개요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249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도시계획시설(소로3-J호선)사업 (청룡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 3) 사업의 규모 : 153.1㎡(폭원 : 4.9 ~ 6.3m, 연장 : 28m, 일반도로)
-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 6)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17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농협유통창동농산물 종합유통센터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1길 1-10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1-1번지
 - 면 적 : 24.3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오수맨홀
 - 내 역 : 오수관로(D=600mm, L=25m), 오수맨홀(D=900mm) 1개소
5. 점용기간 : 2022. 11. 22. ~ 2027. 12. 31.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